이 과제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생계형 적합업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KLI 한국노동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9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연구주관·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손연정(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세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자영(충남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의 고용연계성 검토 ····· 3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7

제2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요 ····· 13

제1절 특별법 제정 이전 논의 ····· 13

1. 논의 배경 ····· 13
2. 입법적 개선 방안 ····· 14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요 ····· 15

제2절 특별법 제정과 주요 내용 ····· 20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 ····· 20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 22
3. 법률 제정 후 후속 조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 33

제3장 양적 고용효과 분석 ····· 37

제1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설명 ····· 37

1. 분석대상 ····· 37
2. 분석대상 기업의 기초통계 ····· 38
3. 분석방법 ····· 40

제2절 고용효과 분석 결과 ····· 44

1. 고용효과 분석 결과 ····· 44
2. 기업 특성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 48

제3절 소 결 ····· 51

제4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 54

제1절 들어가는 말 ····· 54
제2절 설문조사 개요와 표본의 특성 ····· 55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 56
제3절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기업 특성 ····· 57
1. 기업 일반현황 ····· 57
2. 고용 현황 ····· 59
제4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전망 ····· 69
제5절 FGI를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용효과 분석 ····· 77
제6절 생계형 적합업종 내 기업 사례 분석 ····· 81
1. A기업 ····· 82
2. B기업 ····· 84
제7절 소결 ····· 8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1

제1절 결론 ····· 91
제2절 정책 제언 ····· 94

참고문헌 ····· 97

부 록 ····· 98

표 목 차

〈표 1- 1〉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비교 ····· 2
〈표 1-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및 권고 기간 ····· 8
〈표 1- 3〉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업종 수 추이 : 2011~2019 ····· 11

〈표 2- 1〉 관련 법안 논의 과정 ····· 21
〈표 2- 2〉 참고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 비교 검토 ····· 23
〈표 2- 3〉 제정법의 체계 ····· 27
〈표 2- 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대표발의안 ····· 29
〈표 2- 5〉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표발의안 ····· 32
〈표 2- 6〉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 32
〈표 2-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 33

〈표 3-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미지정 기업의 연도별·성별 종사자 수 변화 ···· 39
〈표 3-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미지정 기업의 연도별 재무지표 변화 ····· 40
〈표 3-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 45
〈표 3-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 ····· 46
〈표 3- 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DID-PSM 추정결과 ····· 47
〈표 3- 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DID-PSM 추정결과 ····· 47
〈표 3- 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DID-PSM 추정결과
(남성/여성 종사자 수) ····· 48
〈표 3- 8〉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분석 결과 : 소규모 기업 ····· 49
〈표 3- 9〉 매출 규모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분석 결과 ····· 50

〈표 4- 1〉 지역별 사례 수 ····· 57
〈표 4- 2〉 사업체 기업 규모별·산업별 매출 추이 ····· 58
〈표 4- 3〉 연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중 ····· 58
〈표 4- 4〉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여 가지는 경쟁력 ····· 59

〈표 4- 5〉 연도별 상용직 근로자 구성 ····· 60
〈표 4- 6〉 연도별 비정규직 구성 ····· 61
〈표 4- 7〉 무급가족종사자 변화 ····· 62
〈표 4- 8〉 무급가족종사자 업종별 수행 직무 ····· 63
〈표 4- 9〉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 63
〈표 4-10〉 연도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 64
〈표 4-11〉 청년인력 고용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 ····· 66
〈표 4-12〉 직종별 정상적 업무수행에 부족한 인원 ····· 67
〈표 4-13〉 채용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채용하지 않는 이유 ····· 68
〈표 4-14〉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제품(모델) 수 변화 ····· 69
〈표 4-1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 폐업 가능성 변화 ····· 70
〈표 4-1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과 지정 후 고용 규모 변화 ····· 70
〈표 4-17〉 고용 규모 변화 이유 ····· 71
〈표 4-18〉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 ····· 72
〈표 4-19〉 내년 투자계획 ····· 73
〈표 4-20〉 투자 규모 ····· 73
〈표 4-21〉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 규모 및 임금 변화 예상 ····· 74
〈표 4-22〉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75
〈표 4-2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생활 질 변화 ····· 76
〈표 4-2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력 차이분석 ····· 77

그림목차

[그림 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연계성 ····· 4
[그림 1-2] 기업 내 고용창출 경로 ····· 6
[그림 1-3] 산업 내 고용창출 경로 ····· 7

[그림 2-1] 적합업종 합의 절차 ····· 20
[그림 2-2] 사업조정 신청절차 ····· 20
[그림 2-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대상 ····· 24
[그림 2-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 26

요 약

1.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됨(2018. 5.).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영역의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들이 상존해 왔음.

○ 1997년부터 고유업종 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2006년 품질과 경쟁력 부문에서 이와 같은 고유업종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 폐지됨.

○ 이로 인하여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몇몇 중소기업이 강점이었던 상품 품목에 대하여 중소상공인

들에 대한 생계형 분야에까지도 영향이 미치게 됨

○ 이후 관련 법안들과 뒷받침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온적이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강력한 법·제도보다 자율적인 조정안이 도출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의 양적·질적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최근 입법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례법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은 중소기업이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도록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 규모 및 매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음.

□ 연구 방법 및 분석 범위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제약이 있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라는 목적을 둔 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정책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성과를 단순비교하였을 때 발생하는 표본선택 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적 방법인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 매칭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을 위하여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변수를 구성하였음. 제10차 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식별하였음.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8자리 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5자리 분류코드를 이용함에 따라 해석상에 주의를 요함.

-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5자리 산업분류코드와 일치하나, 제조업의 경우 지정된 업종·품목 범위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한 분류코드를 이용할 수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으로서 고정효과모형과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종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고용전망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임금, 고용안정, 작업환경, 그리고 고용구성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앞의 분석에서 고용에 대한 효과가 기업 규모와 매출액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분하여 살펴봄.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논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경험한, 그리고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체 대표와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파악하였음.

2.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취지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배경

○ 생계형 업종은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들로 구성되며,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 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논의됨.

○ 논의 결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됨(2018. 5.).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내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관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절차

○ 상시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동반성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공표

적합업종 합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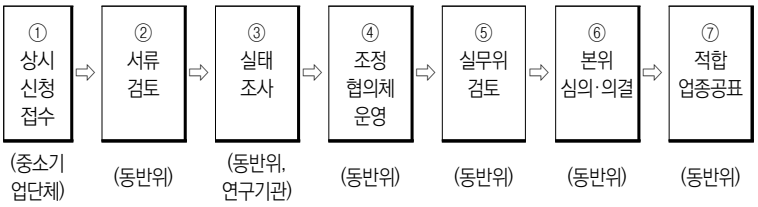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신청 대상

- 소상공인단체는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③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4. 양적 연구 분석 결과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은 고용인원이 약 11~13%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차분법의 동일추세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건(robust)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인 기업별 선형시간 추세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이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에 미친 순 효과(ATT)를 분석한 결과, 매칭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효과의 차이는 약 1.18명으로 나타남.

- Radius Matching, Nearest Neighbor, Kernel Matching 등 세 가지 매칭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고용효과를 가짐을 보였으며,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 규모를 약 1.1~1.2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고용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는 주로 남성에 대한 고용증가로 이어졌으며, 여성 종사자 수에 대한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남.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책효과가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음.

- 기업 규모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서는 고용 규모가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약 9%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 규모를 약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서는 고용증가가 약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와 기업의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고용효과의 크기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소규모 기업 및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고용효과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 대상인 사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가족구성원 중심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책의 목표가 고용창출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결과라고 판단됨.

5. 질적 연구 분석 결과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기업들의 매출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대비 투자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소상공인 투자율 증가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한 업종 내 기업들은 이제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내 기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업종 보호 기간 동안 고용의 변화를 보면, 고용 규모의 큰 변화는 없음.

○ 업종 내 사업체들이 체감하는 업종 보호 효과는 매출액 증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폐업률 감소 등을 주목해야 함.

○ 그리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고용 규모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내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이 된 제조기업과 소상공인 제조기업을 사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의 개선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짐.

- 그러나 사례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고용 규모의 증가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업종 지정으로 인한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매출액 증대, 그리고 이익률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이것이 고용효과로 이어진다고 봄.

○ 설문조사와 FGI 결과와 기업사례 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업종 내 사업체들은 이전 지정 제도와 효과가 동일하거나 또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하여 고용의 양과 질의 수준 향상을 이미 경험한 사업체들은 동일하게 또는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함.
- 둘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비교하여 업종 보호에 더욱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업종 내 사업체들은 기대 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음.

6.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폐업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안정과 증가를 도모하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정짓기보다는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책 목표가 고용창출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 만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 확장으로 추가 고용 여력이 발생해도, 신규 고용으로 인해 소상공인 인원 기준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체가 신규 고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음.
- 생계형 업종 지정의 업종 보호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출액 증가가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익률 개선이 상품 개발 및 혁신이나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때임이 확인되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됨.
- 다른 한편,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업체들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면, 사업체의 매출 하락과 폐업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양적 고용효과의 불확실성은 큼.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되는 업종에서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이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고용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규모 설비가 아닌 근로자의 기술과 숙련 수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체의 특성상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여 매출 향상을 노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숙련 근로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인이 커지게 될 것임.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은 사업이 시행 초기에 있느니만큼 제

도 운용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임.

○ 대기업과 수요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세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이라는 고용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이후 심사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음.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진출과 확장이 제한되어 수요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감소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산과 판매에서 생산성과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고할 것임.

○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판로 지원이 필요함.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고용영향평가 연구에서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 지방 출점 시 지방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매장을 할당한다던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 생산품 및 특산물 전문 코너를 운영하도록 배려하는 등의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장 개선 지원이 필요함.

○ 영세 사업체는 상품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함. 연구개발 지원비 신청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컨설팅을 제공하여 신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 대·중소·소상공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해당 업종의 대-중소-소상공인 간 상생 및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때 일자리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제정 배경 및 이유

○ 생계형 업종은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들로 구성되며,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 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제출됨.

○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됨(2018. 5.).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내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표 1-1〉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비교

구분		중소기업 적합업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보호대상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영위가 적합한 업종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예정(1년 이내) 업종,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업종, ③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만료 예정(1년 이내) 업종 중에서 신청
운영체계	주체	동반성장위원회(민간)	동반성장위원회(민간)는 지정을 추천 정부가 지정·고시 및 보호
	지정	대·중소기업 자율 협의→ 동반성장위원회 심의의결 및 권고·공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장관 고시
	기간	한시적(3년+3년 이내)	5년
대기업 참여제한		인수, 개시, 확장 자제 등 권고 (업종별 특성 반영)	인수·개시 또는 확장 금지 소비자 후생, 관련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대기업의 사업 승인 가능
이행 강제력		미이행 시 공표(동반성장위원회)	위반 시, 벌칙 부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내 벌금 시정명령→공표→(위반지속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위반 관련 매출액의 5% 이내

자료 : 필자 정리

□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영역의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들이 상존해 왔음.

○ 다만, 1997년부터 고유업종 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2006년 품질과 경쟁력 부문에서 이와 같은 고유업종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 폐지됨.
○ 이로 인하여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몇몇 중소기업이 강점이었던 상품품목에 대하여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생계형 분야에까지도 영향이 미침.
○ 이후 관련 법안들과 뒷받침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온적이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강력한 법·제도보다 자율적인 조정안이 도출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의 양적·질적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최근 입법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례법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의 고용연계성 검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은 중소기업이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도록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 규모 및 매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음.

□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함.

○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포함하는 제도로서 생산성 향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

○ 또한,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 부진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연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시장 제약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관한 반작용은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됨.

○ 이윤보·이동주(2004)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되던 업종(1991~2001)은 제조업 대비 사업자 수 1%, 생산액 비중 3.9%, 월평균 종사자 수 1.7%, 부가가치 3.9%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함.

○ 이병기(2015)에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및 산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약 1.6% 높이며 노동투입을 약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함.

□ 이상에서 검토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연계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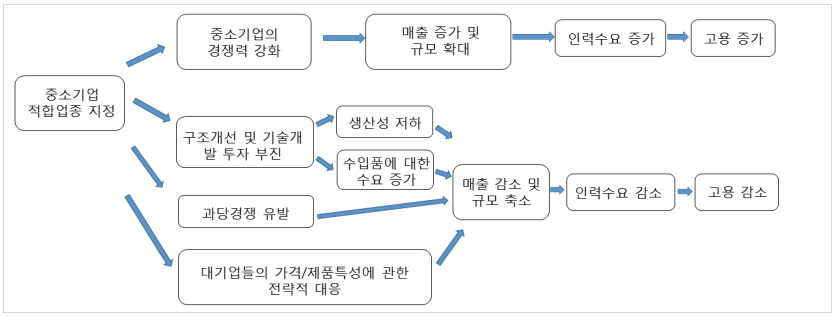

출처 : 필자 작성

□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고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한 기업 내에서 고용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한 산업 내에서 고용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먼저, 한 기업 내에서 고용량이 증가하는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거래처가 확장되거나 또는 납품처가 확보됨으로써 고객이 증가하고 시장이 다양화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면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아짐.
  - 또한, 기업이 기존에 진입하지 못하였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등 사업에 활기가 생김.
  - 예를 들어, 대형마트 행사에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의 필요 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을 통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함.
○ 이러한 유통망 확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짐.
○ 매출 증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설비를 늘리게 하고 또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함.
  -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인력, 연구개발인력 그리고 관리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생산력 증대와 제품의 다양화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꾸준한 매출 확보를 통하여 수익이 증대될 수 있음.
○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1-2] 기업 내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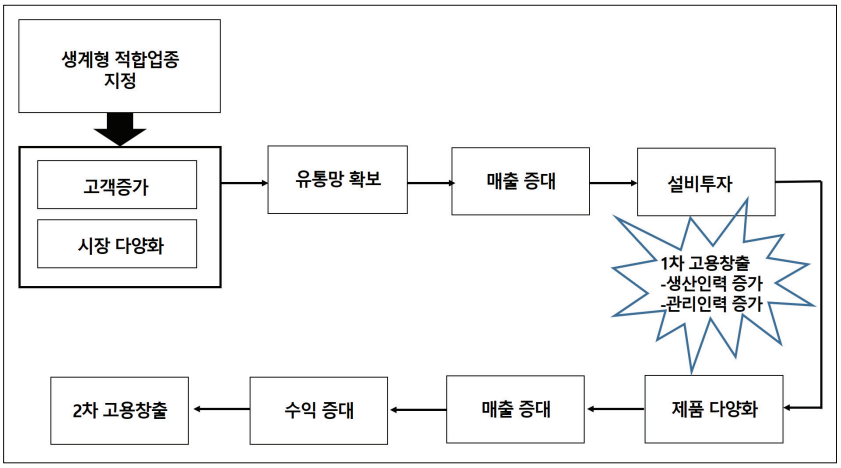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작성

□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산업 수준에서 고용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기업 내에서 고용의 양이 증가하면 당연히 해당 산업의 총고용량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경로 설정을 통하여 예상해 보고자 함.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이 이루어지면, 신규 대기업의 진출과 확장이 억제되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의 시장 확보는 기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즉 폐업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고 동시에 해당 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함.

- 이를 통해 산업 내 총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결과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새롭게 시장 내 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산업 내 진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기업 내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여 해당 업종 내 고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1-3] 산업 내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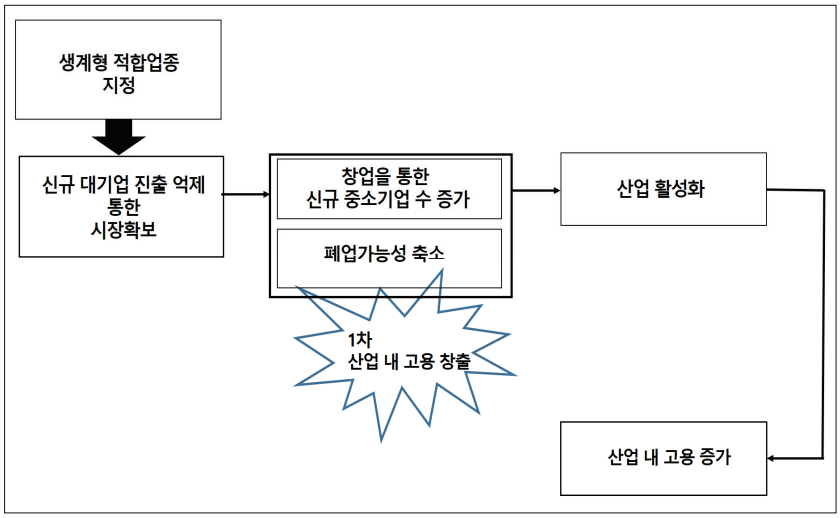

*출처 : 저자작성

□ 이상에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선행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양쪽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긍정적인 고용효과도 강조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경로와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경로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또는 품목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두 가지 효과 중 무엇이 더 큰지 알아보고자 함.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연구 방법 및 분석 범위

○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미시적 고용효과를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의 고용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분류후 2011년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된 아래의 업종·품목은 1, 그렇지 않은 업종·품목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가 고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데이터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함.
  - 〈표 1-2〉에 제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변수 구성
-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으로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과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표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및 권고 기간

연번	업종	품목명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적합업종 권고기간 시작연도	적합업종 권고기간 해제연도	상생협약 여부
1	제조업	재생타이어	22112	2012	2018	No
2	제조업	생석회	23312	2011	2018	Yes
3	제조업	조미김	10220	2011	2014	No
4	제조업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22232	2012	2014	No
5	서비스업	문구소매업	47612	2016	2022	No
6	제조업	사료용 유지	10401	2016	2022	No
7-9	제조업	면류 3개(국수, 냉면, 당면)	10730	2012	2018	Yes
10	제조업	전통떡	10711	2011	2018	Yes
11	제조업	햄버거빵	10712	2011	2018	Yes
12	제조업	순대	10122	2011	2018	No
13	제조업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10759	2013	2019	No
14	제조업	도시락	10751	2012	2018	Yes

〈표 1-2〉의 계속

연번	업종	품목명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적합업종 권고기간 시작연도	적합업종 권고기간 해제연도	상생협약 여부
15	제조업	단무지	10302	2012	2018	Yes
16	제조업	목재펠릿보일러	28520	2015	2021	No
17	제조업	DVR	26519	2012	2015	No
18	제조업	어묵	10211	2011	2018	Yes
19	서비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47632	2013	2019	No
20	제조업	앙금류	10619	2012	2018	Yes
21	제조업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10619	2013	2019	Yes
22	제조업	김치	10301	2011	2018	Yes
23	제조업	골판지상자	17123	2011	2018	Yes
24-30	제조업	단조7개 (기타철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동, 기타비철금속, 보통강, 특수강)	25912	2011	2014	Yes
31-33	제조업	장류3개 (간장, 고추장, 된장)	10743	2011	2018	Yes
34	제조업	청국장	10743	2011	2018	Yes
35	제조업	절연전선	28303	2012	2018	Yes
36	서비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76190	2017	2020	No
37	제조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16102	2015	2021	No
38	서비스업	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	46102	2015	2021	No
39-44	제조업	고압가스충전업6개(수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에세틸렌, 아르곤)	20121	2012	2018	Yes
45	제조업	막걸리	11111	2011	2015	Yes
46	제조업	플라스틱봉투	22231	2013	2019	Yes
47	서비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47991	2013	2019	No
48	제조업	판지상자및용기	17222	2012	2018	No
49	서비스업	보험대차서비스업	76110	2015	2021	No
50-51	제조업	유리2개(기타안전유리, 기타판유리가공업)	23119	2011	2018	Yes
52	제조업	아크용접기	28909	2012	2015	Yes
53-58	제조업	주조6개(특수강, 알루미늄, 회, 가단, 구상흑연, 보통강)	24311, 24312	2011	2018	No
59	제조업	LED조명기구	28410	2012	2015	Yes
60	제조업	아연분말	24290	2012	2015	No

〈표 1-2〉의 계속

연번	업종	품목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10차)	적합업종 권고기간 시작연도	적합업종 권고기간 해제연도	상생협약 여부
61	제조업	두부	10794	2011	2018	Yes
62	제조업	비디오도어폰	26410	2012	2018	No
63	제조업	기타가공사	13104	2012	2018	Yes
64	서비스업	계란도매업	46319	2016	2022	No
65	제조업	아스콘	23991	2011	2014	Yes
66-67	제조업	배전반2개(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28123	2012	2018	No
68	제조업	송배전변압기	28112	2012	2018	No
69-70	제조업	금형2개(프레스, 플라스틱)	29294	2011	2017	Yes
71	제조업	레미콘	23322	2012	2015	Yes
72	제조업	떡국떡및떡볶이떡	10711	2014	2020	No
73	서비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47611	2013	2019	Yes
74	서비스업	화초및산식물소매업	47851	2013	2019	No
75	제조업	맞춤양복	14111	2011	2015	Yes
76	제조업	냉동·냉장쇼케이스	29171	2012	2018	No
77-79	제조업	공기조화장치3개 (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29172	2012	2018	No
80	제조업	냉각탑	29171	2012	2018	No
81	제조업	기타인쇄물	18119	2011	2014	Yes
82	서비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47723	2013	2016	No
83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45120	2013	2019	No
84	서비스업	제과점업	56191	2013	2019	Yes
85	서비스업	자동차전문수리업	95212	2013	2019	No
86-92	서비스업	음식점업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외국식, 분식및김밥, 그외기타음식점업)	56111, 56122, 56123, 56129, 56120, 56194, 56199	2013	2019	Yes
93	제조업	낙뢰방지시스템	28121	2012	2015	No
94	제조업	부식억제제	20499	2012	2015	No

〈표 1-2〉의 계속

연번	업종	품목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10차)	적합업종 권고기간 시작연도	적합업종 권고기간 해제연도	상생협약 여부
95	제조업	자동차재제조부품	30399	2011	2014	Yes
96	제조업	플라스틱병	22232	2012	2018	No
97	제조업	원두커피	10791	2011	2018	No
98-99	제조업	옥수수유2개(원유, 정제유)	10403	2012	2015	Yes
100	제조업	세탁비누	20422	2011	2014	Yes
101	제조업	부동액	20499	2012	2015	No
102-106	제조업	다류5개(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10792	2012	2015	Yes
107	제조업	주차기	29162	2012	2015	No
108	제조업	유기계면활성제	20431	2012	2015	No
109	제조업	차량용블랙박스	26321	2012	2015	No
110	서비스업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	76110	2019	2022	No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 〈표 1-3〉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과 해제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 또는 품목은 총 110개로, 그중 89개는 제조업, 21개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품목들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업종 수 추이 : 2011~201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규지정업종	37	45	18	1	4	3	1	1	-
해제업종	-	-	-	12	21	1	2	47	17
적합업종 수	37	82	100	89	72	74	73	27	10
상생협약	-	-	-	4	1	1	-	-	1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

-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에 속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일반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의 향후 전망 등 조사
- 2018년 8월 20일에서 9월 30일까지 1개월 10일 동안 조사를 함. 이메일과 팩스 등을 이용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음.

제2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요

제1절 특별법 제정 이전 논의

1. 논의 배경

□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영역의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들이 상존해 왔음.

○ 다만, 1997년부터 고유업종 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2006년 품질과 경쟁력 부문에서 이와 같은 고유업종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 폐지됨.

- 이로 인하여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몇몇 중소기업이 강점이었던 상품품목에 대하여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생계형 분야까지에도 영향이 미침.
- 이후 관련 법안들과 뒷받침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온적이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강력한 법·제도보다 자율적인 조정안이 도출되거나 권고들로 인하여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과정 속에서 SSM 골목상권 등 침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 대표적인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국민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들

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인식을 알 수 있게 됨.

2. 입법적 개선 방안

□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같이하고 동위관계인 법률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조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을 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6459).[1)]

■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조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제2조제11호)

□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6825)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생겨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현행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90호, 2019. 1. 15., 일부개정].

포를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9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음식료, 도소매 등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던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경영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음.
○ 이는 실업률 및 저소득층의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이 사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도입(1979년)되었으나, 산업경쟁력 약화,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 등과 같은 부작용 등으로 인해 지정 업종의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에 폐지되었음.
○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근거 법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이행됨.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정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청

- 중소기업단체가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6. 12.〉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7. 4.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5., 2018. 9. 18.〉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9. 20., 2013. 3. 23., 2014. 2. 5., 2017. 7. 26.〉
1. 삭제 〈2014. 2. 5.〉
2. 삭제 〈2014. 2. 5.〉
3. 삭제 〈2014. 2. 5.〉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 2. 5., 2017. 7. 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 2. 5., 2017. 7. 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 3. 23., 2014. 2. 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8. 9. 18.〉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2. 5., 2017. 7. 26., 2017. 10. 17.〉

1.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2. 5.〉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5.〉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23.〉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23., 2014. 2. 5.〉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3. 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3.〉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3., 2014. 2. 5.〉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3. 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 3. 23.〉

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9.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 상시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동반성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공표

[그림 2-1] 적합업종 합의 절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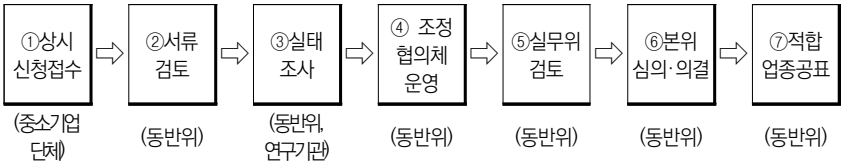

[그림 2-2] 사업조정 신청절차[3)]

제2절 특별법 제정과 주요 내용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이유

○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

2) 이용준(20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7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3쪽.

3)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소개 참조(http://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2_02_process.do).

○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2009~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 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 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진출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 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과정

〈표 2-1〉 관련 법안 논의 과정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상태
201378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위원장	2018.5.28	2018.5.28	원안가결	공포

〈표 2-1〉의 계속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상태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의원	2017.12.8	2018.5.28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20049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이훈의원 등 13인)	의원	2017.1.2	2018.5.28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 (적합업종 위축) 정부의 신중한 제도운영*으로 외국계 기업이 포함된 업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이 축소될 가능성 ⇨ 중소기업에 불리
  * 반면, 민간기구(동반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판단,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 110개 적합업종 중 10개가 외국계 기업을 포함하여 권고

○ 적합업종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위가 2011년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정착되는 중
- 현행처럼 동반위가 운영하는 자율합의 제도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시 정부 실패 가능성
- 시장(민간부문)이 아닌 심의회를 통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 선정된 업종과 비선정된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자원배분 왜곡 등 폐해 발생 가능

○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및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대기업 등에 대한 사업 축소, 소상공인 육성부담금 부과는 과도한 사업 활동을 제한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 제도 개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표 2-2〉 참고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 비교 검토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정부조직법」 제4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 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정의	1.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1.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시행령)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②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기준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사업자 등록증 보유 기업(개인+법인) 상시근로자(5~10인) 및 매출(10~120억) 상한
	독립성 기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업종별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1. 제조업(6개업종) : 1,500억 이하 2. 농업, 임업, 어업 : 1,000억 이하 3. 음료, 인쇄, 비금속 광물 등 : 800억 이하 4. 보건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등 : 600억 이하 5. 숙박, 음식점업, 임대업 등 : 400억 이하 ※ 자동차용신품, 철도차량 부품, 항공이 부품 제조업 등 : 평균 매출액 1,500억 이하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신청 대상

- 소상공인단체는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③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림 2-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대상[4)]

4)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소개 참조(http://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6_03.do)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추천, 심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그림 2-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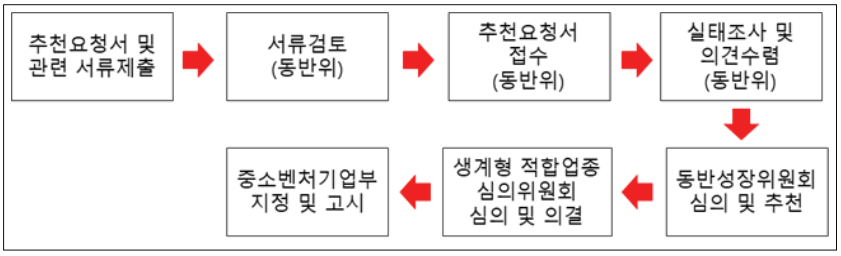

- 추천 요청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반려할 수 있다.

1.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5)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소개 참조(http://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2_02_process.do)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 범위
2.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
3.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표 2-3〉 제정법의 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
제2조(정의)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제2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기청장은 기본계획(3년마다),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함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중기청장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 심의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중기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 * 5년이 경과하면 재지정 여부를 고시,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제 가능
제8조(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함
제9조(시정명령)	제8조를 위반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사업의 철수 등의 시정명령 가능
제10조(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미이행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표 2-3〉의 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제11조(대기업 등에 대한 권고 등)	○ 적합업종 지정·고시 이전 사업영위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철수 및 축소 권고가능(3년 이내 기간)(제1항) ○ 권고 미이행시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 가능(제2항) ○ 대기업 등에 대하여 영위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육성부담금 부과(제3항) * ① 공표 후에도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적합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심의위 승인을 받아 적합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12조(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적합업종 지정·고시 이전에 사업 영위 대기업등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수·축소 권고를 이행한 경우 금융상의 지원 가능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중기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등에 위임 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가능
제15조(벌칙)	중기청장 승인 없이 적합업종 사업진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자(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제16조(양벌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또는 개인)에게 벌금 부과
제17조(과태료)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5백만원)

○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는 “소상공인”,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대기업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형 적합업종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강의 요건,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6)]
- 또한,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6) 이용준(20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이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9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쪽.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중 사업 형태가 영세하고 그 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수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이라고 규정하고 '사업형태의 영세성, 다수 소상공인 종사' 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 특성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문제되었음.[7)]

- 따라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에서는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의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임.

〈표 2-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대표발의안

제정법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3.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4.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을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중 사업형태가 영세하고 그 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수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이용준(20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7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쪽.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20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보다 동 법률을 우선 적용하기 위한 조항임.
- 제정법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반을 다루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정하는 보다 좁은 범위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병존하게 되어, 제3조에 따라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기본계획 수립 등(제5조)

-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제6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존에 적합업종 지정과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두고 있고[8],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업무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9]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동반성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음.[10]

---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10)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시장) 부문이 아닌 심의회를 통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이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911),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제7조)

- 제정법은 소상공인단체가 적합업종·품목 내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운영 전반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는 정부 조치(measures)를 줄일 필요성이 있으므로,[11]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자의 적격성, 해당 업종의 대기업 진출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요건심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참여제한(제8조·제9조 및 제15조)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예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고(제8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제15조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반 대기업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사업 철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9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10조).
-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 제9조 및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안 제9조에 따르면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위반과 관련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영업정지 명령'에 대하여 영업 인허가 주무관청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업정지 명령 권한이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입한 대기업 등이 법률의 위반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제거·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포괄적인 영업정지 명령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본 것임.[12]

15-16쪽.

11)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2017),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연구」,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166쪽.

12) 이용준(20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정유섭의원

〈표 2-5〉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표발의안

제정법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안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사업의 철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영업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표 2-6〉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이행강제금은 매회 「해당 1일당 부과금액 × 부과기간(일수)」로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7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27쪽.

〈표 2-6〉의 계속

위반행위 관련 1일 평균 매출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산정방법
·1천만원 이하	2/100	1일 평균 매출액×2/100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100	20만원 + (1일 평균 매출액 중 1천만원 초과분×3/100)
·1억원 초과	4/100	290만원 + (1일 평균 매출액 중 1억원 초과분×4/100)

※ 비고
1. 별표 2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에 법 제8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그 부과 대상 기간의 일수(日數)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2-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천만원

3. 법률 제정 후 후속 조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2019년 1월 23일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8호)을 시행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시행 2019. 1. 2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8호, 2019. 1. 23., 제정]) [별첨]

□ 심의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 심의기준의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일반기준

- 업종·품목의 범위를 획정하고 그 획정된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을 심의
- 해당 업종·품목이 국민 정서적으로 보호·지원이 부적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사업체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그 소상공인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업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심의 내용은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영향 등을 고려함.
- 대기업 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범위 및 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인수·개시·확장 등을 승인할 때에는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근무 여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자금결제,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시스템 또는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통해 판단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세부기준

- 심의대상 업종의 영세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규모의 영세성'과 '소득의 영세성'의 정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규모의 영세성'은 소상공인 비중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 규모
  -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 심의대상 업종의 총종사자 중에서 소상공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 '소득의 영세성'은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은 소상공인의 수익 등 소득이 낮아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세하게 영위하고 있는 정도를 말함.
  -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 총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평균치
  -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평균임금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1년간 급여 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의 평균치
- 각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종의 해당 값,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전체의 해당 값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안정적 보호 필요성은 심의대상 업종 관련 시장의 경쟁 등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과 '대기업 등의 시장 지배력'의 정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규제 및 인·허가 등 진입장벽의 정도, 대기업 등의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시장의 규모 및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산업경쟁력 영향은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관련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서, '대내적 영향'과 '대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음.
-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확대 등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신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대기업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확대 등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신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소상공인 및 기업, 전문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標的集團面接法), 설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가능

제3장

양적 고용효과 분석

제1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설명

1. 분석대상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의 동 효과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아직 정책적 실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旣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간접적으로 예측하고자 함.

-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 또는 품목은 총 110개로, 그중 89개는 제조업, 21개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품목들인 것으로 나타남. 이하 양적 분석은 〈표 1-2〉에 제시된 업종과 품목에 적용된 제도 효과를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을 시행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함.
- 2011년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및 품목 전체 목록
- 분석을 위하여 제10차 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구분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유형 및 기간. 최초 합의(3년), 재합의(3+3년), 상생협약(3+3+α년) 여부와 각각의 시작과 해제 연도

○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와 이에 해당되는 전 기업체의 지역 및 규모 코드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연도별 고용 규모
- 2008년 이후의 자료들을 이용하였음.

○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함.
- 기업들의 연도별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유형고정자산, 고정자산 등 기업의 재무 정보
-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코드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판단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제외함.
- 2008년 이후의 자료들만 이용하였음.
- 재무 정보는 명목 자료로, 한국은행의 관련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음.

○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 간의 매칭 문제로 인해 실제 고용보험 사업장정보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모두 활용 가능한 표본은 약 51만 표본으로 추출됨.

2. 분석대상 기업의 기초통계

□ 다음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의 특성을 고용보험 및 한

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출한 것임.

○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규모코드를 이용하여 분류한 중소기업 사업체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별 특성

-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체는 5자리 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정의함. 단,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8자리 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해야 하며, 본 연구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5자리 분류코드를 이용함에 따라 해석상에 주의를 요함.

○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분류후 연도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된 업종·품목은 1, 그렇지 않은 업종·품목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가 고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른 사업체들에 대한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와 재무지표 변화 등 기초통계는 각각 〈표 3-1〉과 〈표 3-2〉에 제시됨.

- 종사자 수는 연도별로 상이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미지정 사업체 모두 평균적으로 10~15인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업과 미지정 기업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적합업종 지정 기업에서 종사자 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미지정 기업의 연도별·성별 종사자 수 변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2011	2013	2015	2017
총 업체 수	미지정	43,442	53,615	65,648	53,328
	지정	1,478	3,443	3,406	2,779
종사자 수	미지정	12.2	12.1	10.6	11.0
	지정	13.9	12.8	11.4	10.3
남성 종사자 수	미지정	8.1	7.3	6.2	6.4
	지정	10.1	8.3	7.1	6.0
여성 종사자 수	미지정	3.6	3.3	3.0	3.3
	지정	4.3	3.9	3.5	3.5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미지정 업체 모두 고용과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좀 더 급격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미지정 기업의 연도별 재무지표 변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2011	2013	2015	2017
업력	미지정	9.6	9.8	9.5	9.5
	지정	10.2	10.6	10.2	8.6
매출액	미지정	6,078,493	4,936,128	4,209,025	4,998,541
	지정	6,016,551	4,643,248	3,595,237	2,963,162
영업이익	미지정	255,981	216,418	203,126	228,488
	지정	239,038	228,013	210,389	145,008
총자본	미지정	2,094,467	1,809,190	1,681,029	2,256,761
	지정	1,828,212	1,708,123	1,675,755	1,027,558
유형자산	미지정	1,979,398	1,771,110	1,628,607	1,973,804
	지정	2,579,258	2,038,580	1,701,853	1,537,577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3. 분석방법

□ 어떠한 정책 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과 그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정책 시행의 고유한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추정해야 함.

○ 정책의 고유한 처치효과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성과(factual)와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성과(counterfactual)와의 비교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정책 시행의 성과(factual)와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의 성과(counterfactual) 두 가지를 모두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동일한 시점에서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성과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에 체계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선택 편의 문제로 인해 추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음.

-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고,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은 기업은 대체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라면 고용 여력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고용량의 차이는 적합업종 지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이 활용됨.

□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이중차분법은 두 시점 이상의 변수값이 측정 가능할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결과값들을 적합업종 미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같은 기간 동안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방법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무관한 고용유발 혹은 감소 효과가 분석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대조군의 전후 기간의 처분 값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무관한 고용 변화를 식별할 수 있음. 따라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고용유발효과와 여타 다른 원인에 의한 고용유발효과를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1,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고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

과모형을 통해 분석

- 이중차분법을 통해 사업체 고정효과(firm fixed-effect)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체 고유의 특성을 통제함.
- 추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업체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음. 기업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유형자산의 로그 자료가 통제변수에 포함됨.
-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아래의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y_{i,t} = \alpha + \beta D_{i,t} + X_{i,t}\delta + \mu_i + t_t + \epsilon_{i,t} \quad \cdots\cdots (1)$$

- 위 식 (1)에서 $y_{i,t}$는 기업 i의 t 시점에서의 로그 종사자 수, $D_{i,t}$는 기업 i가 연도 t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X_{i,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업의 특성들을 의미함. μ_i는 기업 고정효과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체 고유의 특성을 나타냄. t_t는 연도 고정효과로 주어진 연도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기 상황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의미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선형시간추세(firm-specific linear time trend)를 추가로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음.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고용효과에 대한 인과적 해석을 위해서는 상기한 대로 동일추세(common trend) 가정이 성립해야 함.
- 동일추세 가정이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정의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적합업종 제도가 없었을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량은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만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적합업종 지정 이전에 동일한 고용 변화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면, 적합업종 지정 전후로 관측되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결과변수 차

분 값이 순수한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단순히 시간추세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식 (2)를 추가로 추정하여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함.

$$y_{i,t} = \alpha + \beta D_{i,t} + X_{i,t}\delta + \mu_i + t_t + \gamma_i t + \epsilon_{i,t} \quad \cdots\cdots (2)$$

- 즉, 기업별 선형시간추세($\gamma_i t$)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각 기업의 종사자 수($y_{i,t}$)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추세를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함.

□ 성향점수매칭법 역시 표본선택 편의를 제거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독립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정확한 고용효과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이 만약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관측할 수 있을 때 추정이 가능함. 하지만 문제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성과를 모두 관측할 수 없다는 점임.

○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은 기업 중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과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을 골라낸 뒤 이 두 집단 간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유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즉,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집단과 미지정된 집단에서 적합업종 지정 여부 이외의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기업을 매칭하여 고용량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임.
- 프로빗이나 로짓 모형으로 추정된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을 수행한 다음 정책 시행 집단과 미시행 집단 간의 고용성과를 비교함으로

써 제도 활용의 순 효과(ATT: Average Treatment on the Treated)를 추정할 수 있음.

제2절 고용효과 분석 결과

1. 고용효과 분석 결과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는 〈표 3-3〉과 같음.

○ 모든 분석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고용량을 약 10~13%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형 (2)는 기업별 선형시간추세를 고려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기업별 선형시간추세를 가미한 고정효과 모형은 이중차분법의 동일 추세(common trend)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동일한 고용 변화 추세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다 robust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임.

○ 기업별 선형시간추세를 감안한 경우에도 결과는 모형 (1)의 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량을 약 11%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형 (3)은 산업대분류, 지역더미를 추가로 통제한 결과이며, 모형 (4)는 기업의 재무지표들의 전기값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기업 재무지표들은 잠재적인 같은 기간 내생성(contemporaneous

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하여 모형 (4)의 추정 시 재무지표 변수들의 당기가 아닌 전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 역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을 약 11~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0.108***	0.111***	0.112***	0.126***
	(0.012)	(0.012)	(0.013)	(0.014)
매출액				0.237***
				(0.007)
총자산				0.161***
				(0.007)
영업이익				-0.016***
				(0.003)
총자본금				0.009***
				(0.003)
유형고정자산				0.014***
				(0.002)
Constant	1.440***	23.083***	26.023***	27.043***
	(0.005)	(4.778)	(4.751)	(5.619)
기업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업체별 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	통제	통제	통제
산업대분류, 지역더미	불포함	불포함	포함	포함
Observations	512,638	512,638	494,488	300,956
R-squared	0.805	0.805	0.802	0.830

주: 1) *** p<0.01, ** p<0.05, * p<0.1.
2) 사업체 단위로 클러스터링하여 표준편차를 구하였음.
3) 모형 (1)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만을 포함한 모형이며, 모형 (2)는 기업 고유의 시간추세를 가미한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 (3)은 산업, 지역,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으며, 모형 (4)는 재무지표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업의 특성들까지 포함한 것임.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 〈표 3-3〉의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적어도 중소기업의 고용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부진 등을 야기하고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고용을 줄이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실제 실증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함.

○ 먼저, 프로빗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알아본 뒤, 이를 토대로 각 사례의 성향점수를 산출함. 그다음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ATT)를 산출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ATT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업의 종사자 수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지정 기업의 종사자 수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의미함. 달리 말하면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고용성과를 추정한 값이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프로빗 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됨.

〈표 3-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

변수	계수	z-Value
로그 총자산	-0.113***	-17.07
로그 매출액	-0.065***	-13.02
로그 영업이익	0.079***	18.24
로그 총자본금	-0.073***	-17.77
로그 유형자산	0.140***	51.15
상수항	-0.935***	-24.33
Pseudo R^2	0.037	
Obs.	427,307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 〈표 3-5〉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과 미지정된 기업 간 매칭을 위해 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 종속변수를 종사자 수로 분석 결과를 보면 매칭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효과의 차이(A-B)는 약 1.18명으로 나타남.

〈표 3-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DID-PSM 추정결과

변수		처치집단(A)	통제집단(B)	차이(A-B)	t-stat
종사자 수	매칭 전	13.48	13.30	0.18*	0.83
	매칭 후	13.48	12.29	1.18***	4.54
관측치 수		17,191	410,116		

주 : *** p〈0.01, ** p〈0.05, * p〈0.1.

○ 〈표 3-6〉은 Radius Matching, Nearest Neighbor, Kernel Matching 등 세 가지 매칭 방법에 따라 계산된 ATT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 세 가지 매칭 방법을 사용했을 때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짐을 보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 규모를 약 1.1~1.2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에 유의미한 고용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DID-PSM 추정결과

매칭 방법	ATT	SE	t-stat
Nearest Neighbor	1.18***	0.26	4.54
Radius	1.13***	0.18	6.34
Kernel	1.18***	0.18	6.62

주 : *** p〈0.01, ** p〈0.05, * p〈0.1.

○ 〈표 3-7〉은 성별 고용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종사자 수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고용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경우 남성 종사자 수는 약 1.2명 증가한 반면, 여성 종사자 수는 약 0.5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표 3-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DID-PSM 추정결과(남성/여성 종사자 수)

변수		처치집단(A)	통제집단(B)	차이(A-B)	t-stat
남성 종사자 수	매칭 전	7.79	7.26	0.54***	3.66
	매칭 후	7.79	6.63	1.16***	6.59
여성 종사자 수	매칭 전	3.74	3.36	0.38***	4.71
	매칭 후	3.74	3.27	0.47***	4.52
관측치 수		17,191	410,191		

주 : *** p〈0.01, ** p〈0.05, * p〈0.1.

2. 기업 특성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 사업체의 규모와 매출액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고용효과의 이질성(heterogeneity) 문제를 고려하여 하위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을 시행함.

- 표본의 샘플을 사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분류해서 해당 그룹 처치효과를 각각 분석함.
- 특히, 소규모 기업과 매출액이 낮은 기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 추정은 추후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의 효과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

3-8〉과 〈표 3-9〉에 제시됨.

○ 2011년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 규모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기업에 한하여 각각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함.

-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 결과, 〈표 3-8〉에서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 규모가 약 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에서는 고용 규모가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분석 결과 : 소규모 기업

	(1)	(2)	(3)
	1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0.118***	0.156***	0.085***
	(0.018)	(0.023)	(0.021)
매출액	0.225***	0.285***	0.224***
	(0.007)	(0.012)	(0.012)
총자산	0.159***	0.174***	0.158***
	(0.007)	(0.012)	(0.010)
자본금	-0.019***	-0.026***	-0.018***
	(0.004)	(0.005)	(0.005)
연구개발비	0.008**	0.003	-0.006
	(0.004)	(0.006)	(0.006)
유형고정자산	0.014***	0.017***	0.009***
	(0.002)	(0.004)	(0.003)
Constant	32.086***	20.003**	15.558
	(6.823)	(9.400)	(9.613)
기업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연도 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사업체별 선형시간추세	통제	통제	통제
산업대분류, 지역 더미	포함	포함	포함
Observations	228,080	93,840	73,358
R-squared	0.764	0.786	0.676

주 : *** p〈0.01, ** p〈0.05, * p〈0.1. 사업체 단위로 클러스터링하여 표준편차를 구하였음.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 기준 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가 5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 규모를 약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서는 고용증가가 약 10%로 나타남.

〈표 3-9〉 매출 규모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영향 분석 결과

	(1)	(2)
	50억 이상	50억 미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0.200***	0.099***
	(0.030)	(0.015)
매출액	0.221***	0.242***
	(0.016)	(0.007)
총자산	0.144***	0.157***
	(0.018)	(0.007)
자본금	-0.019***	-0.018***
	(0.006)	(0.003)
연구개발비	0.064***	-0.001
	(0.010)	(0.004)
유형고정자산	0.027***	0.011***
	(0.005)	(0.002)
Constant	34.061***	25.963***
	(8.612)	(6.931)
기업 고정효과	통제	통제
연도 고정효과	통제	통제
사업체별 선형시간추세	통제	통제
산업대분류, 지역 더미	포함	포함
Observations	65,451	244,545
R-squared	0.769	0.813

주 : *** p<0.01, ** p<0.05, * p<0.1. 사업체 단위로 클러스터링하여 표준편차를 구하였음.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제3절 소 결

□ 본 연구의 목적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제약이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旣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라는 목적을 둔 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분석을 위하여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변수를 구성하였음.

○ 분석을 위하여 제10차 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식별하였음.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8자리 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5자리 분류코드를 이용함에 따라 해석상에 주의를 요함
  -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5자리 산업분류코드와 일치하나, 제조업의 경우 지정된 업종·품목 범위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한 분류코드를 이용할 수 없었음.

□ 정책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성과를 단순비교하였을 때 발생하는 표본선택 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적 방법인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은 고용인원이 약 11~13%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차분법의 동일추세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보다 robust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인 기업별 선형시간추세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이와 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도출됨.

○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에 미친 순효과(ATT)를 분석한 결과, 매칭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효과의 차이는 약 1.18명으로 나타남.

- Radius Matching, Nearest Neighbor, Kernel Matching 등 세 가지 매칭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고용효과를 가짐을 보였으며,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 규모를 약 1.1~1.2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고용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는 주로 남성에 대한 고용증가로 이어졌으며 여성 종사자 수에 대한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남.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책효과가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음.

- 기업 규모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서는 고용 규모가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약 9%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 규모를 약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데 비해,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서는 고용증가가 약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와 기업의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고용효과의 크기는 기

업의 규모와 매출액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소규모 기업 및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고용효과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 대상인 사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책의 목표가 고용창출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결과라고 판단됨.

제4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들어가는 말

○ 본 장은 기업 간의 사업영역 조정 정책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정으로 인한 고용전망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임금, 고용안정, 작업환경, 그리고 고용구조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앞서 분석에서 고용에 대한 효과가 기업 규모와 매출액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한 업종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함.

○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제2절에서는 설문조사 개요와 표본의 특성에 관해서 기술하고자 함
- 제3절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 내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자 함.
- 제4절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

고자 함.

- 제5절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업종 지정과 고용의 양과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업종 지정을 경험한, 그리고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체 대표와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제6절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업종 지정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사업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제7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설문조사 개요와 표본의 특성

□ 조사 목적

○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 내용

○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에 속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일반현황 조사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 조사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의 향후 전망 등 조사

□ 조사 시기 및 방식

○ 2018년 8월 20일~9월 30일까지 1개월 10일 동안 조사 실시

○ 이메일과 팩스 등을 이용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8월 기준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한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
○ 기업체 대표 설문조사 응답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 업종별 구성
-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고,[13]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224개(53.1%), 그리고 그 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198개(46.9%)임.

○ 기업 규모별 구성
- 연구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구분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업종별 매출 그리고 사업체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과 그 외 사업체를 구분하였음.
-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표본 구성을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표본 중 263개(62.3%)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59개(37.7%)임.

○ 지역별 구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고르게 구성하려고 하였으며, 표본기업 중 30.1%로 수도권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 23.7%이며, 대경권(대구, 경북) 9.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13) 장류에 포함하는 4가지 한 업종으로 표시

〈표 4-1〉 지역별 사례 수

(단위: 개, %)

지역	사례 수 (N)	비율
수도원	127	30.1
충청강원	79	18.7
전라제주권	77	18.2
대경권	39	9.2
동남권	100	23.7
전 체	422	100

○ 기업 업력 구성

- 표본 기업들은 1990~1999년 사이 설립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29.4%), 그다음 2000~2004년 사이 설립된 기업이 많음(20.1%).
- 제조업과 그 외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1989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2.3%), 그 외 업종은 1990~1999년 사이 설립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38.4%).

제3절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기업 특성

1. 기업 일반현황

○ 사업체 매출액 추이

- 전체적으로 사업체의 매출액은 2016~2017년도에 상승하였다가 2018년도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와 유사하게 2017년도 상승하였다가 2018년도 약간 주춤하였지만, 이와 달리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매년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

로 보이며, 그 외 업종은 2017년 상승하였다가 2018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 사업체 기업 규모별·산업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전체	2110.8 (5748..0)	2131.7 (5848.6)	2122.5(5930.1)
기업 규모	소상공인	465.3(818.6)	482.2(787.8)	475.9(826.5)
	소기업·중기업	6312.8(9576.1)	6111.8(9663.7)	5855.9(9683.7)
산업	제조업	2859.0(6420.2)	2879.9(6584.0)	2895.9(6696.7)
	그 외 업종	1168.8(4618.3)	1182.8(4602.8)	11551.3(4636.8)

*2016년 전체 N= 408 제조업 N=215, 서비스업N=193,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3
*2017년 전체 N= 416 제조업 N=220, 서비스업N=196,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9
*2018년 전체 N= 422 제조업 N=224 서비스업N=198,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16

○ 사업체 연간 투자액 추이

- 연간 투자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2018년도 매출액 대비 투자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중기업의 경우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중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그 외 업종 모두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중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제조업의 경우 증가의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3〉 연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중

(단위: %)

		2016	2017	2018
	전체	4.6(13.5)	4.6(13.4)	6.8(26.5)
기업 규모	소상공인	5.8 (15.9)	5.6(15.8)	8.7(44.2)
	소기업·중기업	2.2(5.3)	2.6(6.3)	3.2(11.4)
산업	제조업	6.7(16.8)	6.4(15.8)	10.0(49.1)
	그 외 업종	2.3(7.7)	2.5(9.6)	3.1(9.3)

*2016년 전체 N= 408 제조업 N=215, 서비스업N=193,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3
*2017년 전체 N= 416 제조업 N=220, 서비스업N=196,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9
*2018년 전체 N= 422 제조업 N=224 서비스업N=198,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16
*가로는 표준편차

○ 사업체 경쟁력

- 같은 제품을 생산 및 서비스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여 사업체가 가지는 경쟁력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품질(27.3%)이 경쟁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기술적 능력(19.0%), 지리적 위치(16.8%)가 경쟁력이라고 응답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질(31.9%)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지리적 위치(17.1%), 기술적 능력(15.2%)이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음.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를 보면, 동일하게 품질(19.5%)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18.9%) 응답하기도 함.

〈표 4-4〉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여 가지는 경쟁력

(단위: 개, %)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기술적 능력	80	19.0	40	15.2	40	25.2
지리적 위치	71	16.8	45	17.1	26	16.4
디지인 우수성	4	0.9	3	1.1	1	0.6
브랜드 가치	18	4.3	11	4.2	7	4.4
가격	57	13.5	36	13.7	21	13.2
품질	115	27.3	84	31.9	31	19.5
없음	69	16.4	39	14.8	30	18.9
서비스 수준	3	0.7	2	0.8	1	0.6

*전체 N=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 및 중기업 N=159
*이외, 국산재료 사용, 사업경력, 신용도, 가족적 분위기 등 응답이음. 이에 100 아닐 수 있음.

2. 고용 현황

○ 상용직 근로자 구성 변화

- 최근 3년간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음.
- 근로자 구성 변화를 보면, 성별에 관련 없이 큰 변화는 없으며, 연령으로 구분해 보아도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음.

- 업종으로 구분하여 보아도 전체 경향과 유사함.
- 언급할 것은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상용직 근로자가 있지만,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외국인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연도별 상용직 근로자 구성

(단위: 개, %)

			2016		2017		2018	
			M	SD	M	SD	M	SD
전체	전체		9.6	23.9	9.7	24.3	9.6	24.6
	성별	남성	5.1	13.0	5.1	12.7	5.0	12.7
		여성	4.5	13.1	4.6	13.6	4.6	14.1
	연령	20~39세	2.8	12.3	2.8	12.7	2.8	12.6
		40~59세	5.7	12.3	5.7	12.4	5.6	12.4
		60세 이상	1.1	3.0	1.2	3.0	1.2	3.3
	외국인		0.7	3.9	0.7	4.1	0.7	3.9
제조업	전체		14.3	26.9	14.2	27.0	14.1	27.6
	성별	남성	6.8	12.2	6.7	12.0	6.5	12.0
		여성	7.5	16.8	7.6	17.1	7.5	17.9
	연령	20~39세	4.0	10.4	3.8	10.1	3.8	10.1
		40~59세	8.4	15.8	8.6	15.9	8.4	16.0
		60세 이상	1.9	3.9	1.8	3.8	1.9	4.2
	외국인		1.3	5.2	1.4	5.6	1.4	5.3
그 외 업종	전체		4.5	18.7	4.6	19.7	4.5	19.5
	성별	남성	3.3	13.7	3.3	13.3	3.2	13.2
		여성	1.2	5.2	1.3	6.5	1.3	6.5
	연령	20~39세	1.6	14.1	1.7	15.0	1.6	15.0
		40~59세	2.6	4.9	2.5	4.9	2.4	4.8
		60세 이상	0.4	1.2	0.4	1.4	0.4	1.4
	외국인		0.0	0.0	0.0	0.0	0.0	0.0

*2016년 전체 N= 408 제조업 N=215, 서비스업N=193,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43
*2017년 전체 N= 416 제조업 N=220, 서비스업N=196,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3
*2018년 전체 N= 422 제조업 N=224 서비스업N=198,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비정규직 수 변화

-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인원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는 인원수에서는 비정규직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나,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인원수도 감소하고,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보면, 비정규직 수도 감소하고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는 수치와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6〉 연도별 비정규직 구성

(단위: 개, %)

		2016		2017		2018	
		M	SD	M	SD	M	SD
전체	인원	1.5	8.4	1.3	5.8	1.3	5.1
	비율	39.3	129.7	37.3	125.2	38.4	126.3
소상공인	인원	1.3	2.6	1.2	2.5	1.2	2.6
	비율	63.6	164.7	61.8	161.6	64.6	163.9
소기업·중기업	인원	1.9	13.6	1.4	9.1	1.3	7.6
	비율	6.6	34.1	6.1	26.5	6.0	26.6
제조업	인원	2.3	11.3	1.9	7.8	1.9	6.7
	비율	37.6	107.3	34.4	91.6	36.1	97.3
그 외 업종	인원	0.6	1.7	0.5	1.8	0.5	1.7
	비율	41.5	155.2	41.3	160.3	41.5	157.8

*2016년 전체 N= 408 제조업 N=215, 서비스업N=193,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3
*2017년 전체 N= 416 제조업 N=220, 서비스업N=196,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9
*2018년 전체 N= 422 제조업 N=224 서비스업N=198,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비율 = (비정규직 수/상용직)*100

○ 무급가족종사자 수

- 전체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 수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용직 대비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을 보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 모두 인원수의 변화는 포착되지 않지만, 상용직 근로자 대비 가족종사자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업종별로 보아도 제조업과 그 외 업종 모두 상용직 근로자 대비 가족종사자 비중은 증가함.

〈표 4-7〉 무급가족종사자 변화

(단위: 명, %)

		2016		2017		2018	
		M	SD	M	SD	M	SD
전체	인원	0.4	0.6	0.4	0.6	0.4	0.6
	비율	10.7	29.7	11.6	31.8	13.0	32.9
소상공인	인원	0.5	0.7	0.5	0.7	0.5	0.7
	비율	16.8	36.6	17.2	37.1	19.9	39.6
소기업·중기업	인원	0.2	0.5	0.2	0.5	0.2	0.5
	비율	2.6	13.1	4.3	21.4	4.6	18.9
제조업	인원	0.4	0.7	0.4	0.8	0.4	0.7
	비율	10.4	29.8	11.6	32.8	12.6	32.5
그 외 업종	인원	0.3	0.5	0.3	0.5	0.3	0.5
	비율	11.0	29.7	11.6	30.6	13.-6	33.5

*2016년 전체 N= 408 제조업 N=215, 서비스업N=193,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3
*2017년 전체 N= 416 제조업 N=220, 서비스업N=196,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09
*2018년 전체 N= 422 제조업 N=224 서비스업N=198,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비율 = (가족종사자/상용직)*100

○ 가족종사자 직무

- 늘어나고 있는 가족종사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 및 기술 기능직(3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관리직(29.5%)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에서 꽤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외 업종의 경우, 사무관리직(44.0%)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객 응대 및 상담 직무(35.0%)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가족종사자들이 사업체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8〉 무급가족종사자 업종별 수행 직무

(단위: 개, %)

항목	제조업		그 외 업종	
	N	비율	N	비율
사무관리직	39	29.5	39	44.0
연구개발직	7	5.3	-	-
품질관리직	12	9.1	-	-
생산.기술.기능직	40	30.3	-	-
영업.판매직	26	19.7	-	-
배송직	8	6.1	-	-
고객응대. 상담직	-	-	31	35.0
수리. 유지보수. 기능직	-	-	8	9.0
포장. 운송	-	-	10	11.0
전체	132	100..0	88	100.0

*복수 응답

○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6.5년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를 구분해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보다는 길게 6.8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전체보다는 낮게 6.2년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6.1년 일하며, 그 외 업종은 제조업보다 길고, 그리고 전체보다도 긴 7.2년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업체들의 평균 업력이 20년 전후로 나타나는데, 이와 비교하여 보면 근속연수가 높지 않음.

〈표 4-9〉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단위: 년)

	평균(M)	표주편차(SD)	최솟값	최댓값
전체	6.5	5.2	1.0	30.0
소상공인	6.8	5.5	1.0	30.0
소기업·중기업	6.2	4.7	1.0	30.0
제조업	6.1	4.7	1.0	27.0
그 외 업종	7.2	5.6	1.0	30.0

*전체 N= 422 제조업 N=224 서비스업N=198,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69

○ 직종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 전체적으로 직종에 상관없이 일별 평균임금은 2014~2018년까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와 비교하여 생산기술기능직, 영업 및 판매직, 그리고 포장 및 운송 직종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볼 때도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달리 사무직, 연구개발직, 품질관리직, 그리고 고객응대 및 상담직의 경우 전체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래도 연도별로는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사무관리직과 연구개발직,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의 경우 전체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도 꾸준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달리 품질관리직, 생산·기술·기능직, 고객응대 및 상담직, 그리고 포장 및 운송직의 경우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기술·기능직의 경우 2018년도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연도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단위: 원)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2014		2016		2018		2014		2016		2018		2014		2016		2018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사무관리직	177	57	189	61	204	64	157	44	167	45	181	52	195	61	208	65	223	67
연구개발직	247	89	260	92	273	95	184	89	188	97	198	92	264	81	277	82	293	86
품질관리직	221	39	231	45	245	49	216	50	224	56	226	59	222	36	233	41	251	45
생산.기술.기능직	239	161	250	158	261	152	253	205	264	203	273	196	220	54	232	54	247	56
영업.판매직	252	177	271	172	171	44	265	224	270	219	291	226	237	94	239	88	250	89
고객응대.상담직	171	44	182	45	191	46	146	60	156	60	166	65	178	38	188	40	197	40
포장.운송	221	133	236	130	23	138	238	198	253	194	274	205	208	41	223	44	239	44

*세전 총액 기준

-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을 비교하여 보면, 사무관리직과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기업·중기업 임금이 더 높고, 이 중 연구개발직의 경우 그 차이가 약 1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달리 소상공인의 임금수준이 더 높은 직종도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생산·기술·기능직과 영업 및 판매직, 그리고 포장 및 운송직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력 활용

- 20~30년 청년인력 고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 특성상 청년인력 고용 필요성이 낮다고(36.5%) 응답한 사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이와는 달리 추가적인 청년인력 고용을 원하나 희망하는 경력을 가진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33.4%) 응답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도 전체와 마찬가지로, 사업 특성상 청년인력 고용 필요성이 낮다고(42.2%) 응답한 사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이와는 달리 추가적인 청년인력 고용을 원하나 희망하는 경력을 가진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31.2%) 응답함.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는 청년인력에 대하여 추가적인 청년인력 고용을 원하나 희망하는 경력을 가진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37.1%)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사업 특성상 청년인력 고용의 필요성이 낮다고(27.0%) 응답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추가적인 청년인력 고용을 원하나 희망하는 경력을 가진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36.6%)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사업 특성상 청년인력 고용의 필요성이 낮다고(33.9%) 응답함.
- 그 외 업종은 제조업과 달리, 사업 특성상 청년인력 고용 필요성이 낮다고(39.4%) 인식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추가적인 청년인력 고용을 원하나 희망하는 경력을 가진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27.3%) 응답함.

〈표 4-11〉 청년인력 고용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

(단위: 개, %)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제조업		그 외 업종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사업 특성상 청년인력 고용 필요성 낮음	154	36.5	111	42.2	43	27.0	76	33.9	78	39.4
이미 적정한 청년인력 고용하고 있음	62	14.7	31	11.8	31	19.5	33	14.7	29	14.6
추가적인 고용을 희망하나 적절한 교육 및 경력 가진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141	33.4	82	31.2	59	37.1	87	38.8	54	27.3
상용직으로 고용하나 이탈 잦음	34	8.1	15	5.7	19	11.9	20	8.9	14	7.1
임시직으로 고용하나 이탈 잦음	12	2.8	9	3.4	3	1.9	3	1.3	9	4.5
임금이 적어 청년 고용 어려움	4	.9	3	1.1	1	.6	1	.4	3	1.5
사업 부진으로 고용 자체 어려움	7	1.7	6	2.3	1	.6	1	.4	6	3.0
지방이어서 청년인력 구하기 어려움	2	.5	2	.8	0	0	1	.4	1	.5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청년 고용 어려움	1	.2	1	.4	0	0	1	.4	0	0
일의 강도가 강해 청년들 취업 꺼려함	5	1.2	3	1.1	2	1.3	1	.4	4	2.0
전체	422	100.0	263	100.0	159	100.0	224	100.0	198	100.0

○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 인원

- 2019년 7월 기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물은 결과,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직종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원 부족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가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 중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부족한 인원을 물은 결과, 직종별 차이는 있으나 1~2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보아도, 직종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원 부족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업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부족한 인원을 물은 결과, 직종별 차이는 있으나 1~2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 산업별로 구분해도 업종에 상관없이 직종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원 부족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부족한 인원을 물은 결과, 직종별 차이는 있으나 1~2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표 4-12〉 직종별 정상적 업무수행에 부족한 인원

(단위: 개, %)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사무관리직	해당 없음	116	27.5	96	36.5	20	12.6
	부족하지 않음	277	65.6	150	57.0	127	79.9
	부족	29	6.9	17	6.5	12	7.5
	부족인원	1.24		1.80		1.33	
연구개발직	해당 없음	288	68.2	195	74.1	93	58.5
	부족하지 않음	120	28.4	62	23.6	58	36.5
	부족	14	3.3	6	2.3	8	5.0
	부족인원	1.07		1.00		1.13	
품질관리직	해당 없음	83	19.7	181	68.8	77	48.4
	부족하지 않음	266	63.0	75	28.5	72	45.3
	부족	73	17.3	7	2.7	10	6.3
	부족인원	1.18		1.00		1.30	
생산. 기술. 기능직	해당 없음	83	19.7	60	22.8	23	14.5
	부족하지 않음	266	63.0	165	62.7	101	63.5
	부족	73	17.3	38	14.4	35	22.0
	부족인원	1.90		1.61		2.23	
영업. 판매직	해당 없음	153	36.3	99	37.6	54	34.0
	부족하지 않음	217	51.4	127	48.3	90	56.6
	부족	52	12.3	37	14.1	15	9.4
	부족인원	1.67		1.70		1.60	
고객응대. 상담직	해당 없음	281	66.6	186	70.7	95	59.7
	부족하지 않음	132	31.3	72	27.4	60	37.7
	부족	9	2.1	5	1.9	4	2.5
	부족인원	1.56		1.20		2.00	
포장. 운송	해당 없음	208	49.3	141	53.6	67	42.1
	부족하지 않음	196	46.4	113	43.0	83	52.2
	부족	18	4.3	9	3.4	9	5.7
	부족인원	1.06		1.00		1.11	

*기타 수리보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고용의 어려움

-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경영상 어려움(38.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22.1%) 인력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경영상 어려움(45.0%)으로 인하여 채용을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는 지원자 부재(13.8%)로 응답하였음.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는 전체와 소상공인과 달리 지원자가 없어(35.3%) 인력 부족은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경영상 어려움(27.5%)을 이유로 꼽았음.

〈표 4-13〉 채용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채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현재 경영상 어려움 있어서	50	38.2	36	45.0	14	27.5
지원자 부재	29	22.1	11	13.8	18	35.3
적격자 부재	14	10.7	5	6.3	9	17.6
생계형 적합업종 미선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3	2.3	2	2.5	1	2.0
투자나 사업확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7	5.3	5	6.3	2	3.9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투자 및 사업확장 어려움	3	2.3	2	2.5	1	2.0
투자 및 사업확장에 대한 비용 조달 어려움	2	1.5	1	1.3	1	2.0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23	17.6	18	22.5	5	9.8
전 체	131	100.0	80	100.0	51	100.0

제4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전망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한 분석하였음.

○ 먼저, 이제 시행을 시작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효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제품(모델) 수 변화

- 적합업종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제품(모델) 수의 변화는 지정을 100%라고 보았을 때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101%라고 응답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 규모로 구분해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남.

〈표 4-14〉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제품(모델) 수 변화

(단위: %)

	변화율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101.0	13.8
소상공인	101.0	13.3
소기업·중기업	101.0	14.7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폐업률 변화

- 적합업종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향후 5년 이내 폐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지정 전 17.6%에서 지정 후 13.5%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지정 전 22.5%에서 지정 후 17.2%로 약 5%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지정 전 9.5%에서 지정 후

7.3%로 약 2%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업종 보호 제도의 효과를 보다 체감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1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 폐업 가능성 변화

(단위: %)

	지정 전	지정 후
전체	17.6	13.5
소상공인	22.5	17.2
소기업·중기업	9.5	7.3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 규모 변화

- 적합업종 지정 전과 지정 후를 비교하여 고용 규모의 변화를 물은 결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75.4%)한 기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고용 규모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8.0%, 그리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6.6%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규모를 구분하여 보아도, 모두 고용 규모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소상공인보다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고용 규모의 변화가 더 없다고 느끼는 경향을 볼 수 있음.

〈표 4-1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과 지정 후 고용 규모 변화

(단위: 개, %)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고용 규모 감소	76	18.0	52	19.8	24	15.1
변화 없음	318	75.4	194	73.8	124	78.0
고용 규모 증가	28	6.6	17	6.5	11	6.9
전체	422	100	263	100.0	159	100.0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 규모 변화 이유

- 고용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매출액 감소(90.5%)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함.
- 기업 규모로 구분해 보아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달리 고용 규모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매출액 증가(59.3%)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문물량 증가(33.3%)를 이유로 꼽았음.
-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보아도 이와 동일하게 매출액 증가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는 주문물량 증가가 고용증가의 이유로 나타남.
- 결과를 미루어볼 때, 매출액이 고용 규모 변화에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표 4-17〉 고용 규모 변화 이유

(단위: 개, %)

항목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감소이유	매출액 감소	67	90.5	47	94.0	20	83.3
	조직 축소	42	5.4	1	2.0	3	12.5
	업무 효율화	2	2.7	1	2.0	1	4.2
	인건비 부담	1	0.1	1	2.0	0	0
	전체	74	100	50	100	24	100.0
증가이유	매출액 증가	16	59.3	10	58.8	6	60.0
	투자 증가	2	7.4	1	5.9	1	10.0
	주문물량 증가	9	33.3	6	35.3	3	30.0
	전체	27	100	17	100	10	100

*감소 이유 기타: 지원자 없음, 이직자 많음.
*증가 이유 기타: 업무의 세분화로 인한 인원 증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

- 적합업종 지정이 사업체 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금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직률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안정도 그대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일의 흥미, 종업원 헌신도, 그리

고 작업환경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은 임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률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안정도 그대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일의 흥미, 종업원 헌신도, 그리고 작업환경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중기업은 임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률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안정은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업원의 일의 흥미, 종업원 헌신도는 그대로에 가깝고, 마지막으로 작업환경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에는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4-18〉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

(단위: 점)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M	SD	M	SD	M	SD
임금	2.2	.59	2.2	.62	2.1	.52
이직률	1.9	.43	1.9	.48	1.9	.34
고용안정	2.8	.53	2.8	.55	2.	.49
종업원의 일의 흥미	2.9	.55	2.8	.57	2.6	.50
작업환경	3.0	.42	3.0	.40	3.8	.45
종업원 헌신도	2.9	.49	2.9	.47	2.9	.53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다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후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시설 투자계획 및 규모

- 생계형 적합업종 이후의 상황인 2020년의 사업체의 투자계획을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힌 사업체가 27.5%, 그리고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힌 사업체가 72.5%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로 구분해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남.

- 이어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020년 159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년 뒤에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 규모를 예상함.
-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그리고 소상공인과 비교하여 소기업·중기업의 투자 규모는 1.5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투자를 늘릴 것으로 응답함.

〈표 4-19〉 내년 투자계획

(단위: 개, %)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투자계획 있음	116	27.5	72	27.4	44	27.7
투자계획 없음	306	72.5	191	72.6	115	72.2
전체	422	100.0	263	100.0	159	100.0

〈표 4-20〉 투자 규모

(단위: 원)

연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M	SD	M	SD	M	SD
2020	159.6	284.1	111.6	265.7	235.0	298.7
2024	158.8	175.3	97.3	202.5	251.9	340.7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매출 증가로 인한 고용과 임금 변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의 증대를 가정하고 고용과 임금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 물은 결과,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인원을 1명 이상 늘릴 수 있으며, 임금인상은 3.8%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이 40% 이상 증가해서 고용 규모를 1명 이상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음.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20% 증가하면 1명 이상 고용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음.

〈표 4-21〉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 규모 및 임금 변화 예상

(단위: 명, %)

매출 증가율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추가 고용		임금인상률		추가 고용		임금인상률		추가 고용		임금인상률	
5%	0.2	0.8	0.7	2.2	0.2	0.5	0.6	2.3	0.4	1.0	0.8	2.1
10%	0.6	1.2	1.7	3.7	0.4	0.8	1.8	4.1	0.8	1.6	1.5	3.1
20%	1.2	2.1	3.8	5.7	0.9	1.1	3.9	6.2	1.8	3.1	3.6	4.8
40%	2.2	3.5	6.8	7.6	1.6	1.5	7.4	8.0	3.0	5.3	5.7	6.8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채용계획

- 2020년 채용계획에 대하여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물은 결과, 정규직(74.4%)과 비정규직(88.9%) 모두 현재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규직(20.1%)과 비정규직(5.9%) 모두 채용예정이라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함.
- 이러한 경향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을 구분하여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남.
- 근로시간으로 보면, 전일제(75.1%), 시간제(88.2%) 모두 현재를 유지하겠다는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일제의 경우 채용예정(20.1%)이 다음이고, 시간제의 경우는 줄일 계획과 채용예정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규모를 유지(75.1%)하겠다는 사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채용예정 사업체는 17.1%로 나타남. 그리고 시간제는 현재를 유지(85.6%)하겠다는 사업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간제를 줄일 계획(7.6%)인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중기업 또한 전일제 근로자 규모를 유지(74.2%)하였다는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채용예정(25.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간제도 이와 동일하게 현재 유지(92.5%)가 가장 많았으며, 채용예정(4.4%)이 그다음을 차지함.

〈표 4-22〉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단위: 개, %)

구분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N	비율	N	비율	N	비율
고용형태	정규직	현재유지	314	74.4	201	76.4	113	71.1
		줄일계획	23	5.5	18	6.8	5	3.1
		채용예정	85	20.1	44	16.7	41	25.8
			422	100.0	263	100.0	159	100.0
	비정규직	현재유지	375	88.9	226	85.9	149	93.7
		줄일계획	22	5.2	18	6.8	4	2.5
		채용예정	25	5.9	19	7.2	6	3.8
			422	100.0	263	100.0	159	100.0
근로시간	전일제	현재유지	317	75.1	199	75.7	118	74.2
		줄일계획	20	4.7	19	7.2	1	0.6
		채용예정	85	20.1	45	17.1	40	25.2
			422	100.0	263	100.0	159	100.0
	시간제	현재유지	372	88.2	225	85.6	147	92.5
		줄일계획	25	5.9	20	7.6	5	3.1
		채용예정	25	5.9	18	6.8	7	4.4
			422	100.0	263	100.0	159	100.0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미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예상을 물은 결과, 임금의 경우 2.6대로 소폭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률은 조금은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고 볼 수 있음. 고용안정은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일의 흥미와 헌신도 그리고 작업환경도 소폭 나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보다 그리고 소기업·중기업과 비교하여서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률은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고용안정 또한 소폭 개선된다고 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일의 흥미와 헌신도 그리고 작업환경 또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소기업·중기업의 경우, 임금은 상승의 기대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나 소상공인보다 그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이직률, 고용안정, 작업환경, 그리고 종업원의 일의 흥미와 헌신도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생활 질 변화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금	2.60	0.9	2.75	0.9	2.35	0.7
이직률	1.89	0.5	1.87	0.5	1.92	0.4
고용안정	3.17	0.6	3.20	0.6	3.11	0.6
종업원의 일의 흥미	3.16	0.6	3.20	0.6	3.10	0.6
작업환경	3.31	0.5	3.35	0.6	3.24	0.5
종업원 헌신도	3.19	0.6	3.23	0.6	3.13	0.6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미치는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의 차이를 분석함.

- 전체적인 항목으로 보았을 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수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한 결과, 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보아도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기업·중기업의 이직률에서 두 제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행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업종 내 사업체로 하여금 근로생활의 질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2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력 차이 분석

항목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A	B	유의미성	A	B	유의미성	A	B	유의미성
임금	2.21	2.60	.000	2.23	2.75	.000	2.16	2.35	.000
이직률	1.97	1.89	.000	1.99	1.87	.000	1.94	1.92	.319
고용안정	2.88	3.17	.000	2.84	3.20	.000	2.94	3.11	.000
종업원의 일의 흥미	2.90	3.16	.000	2.86	3.20	.000	2.96	3.10	.000
작업환경	3.05	3.31	.000	3.04	3.35	.000	3.08	3.24	.000
종업원 헌신도	2.94	3.19	.000	2.94	3.23	.000	2.96	3.13	.000

*전체 N= 422, 소상공인 N=263, 소기업·중기업 N=159
*A=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B=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5절 FGI를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용효과 분석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논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경험한 그리고 신청을 앞둔 사업체 대표와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파악하였음.

○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조사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고용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함.

□ FGI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섭외 및 인터뷰 진행

○ 조사 규모 : 총 13명
- 그룹 1 :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제조업 4명
- 그룹 2 :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서비스업 4명
- 그룹 3 :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협회 관계자 5명

○ 참석자

순번	업종	직위	업체명
1	OO제조업	대표	OO식품공업사
2	OO 제조업	대표	OOO푸드
3	OO 제조업	대표	OO식품
4	OO 제조업	전무	OO식품
5	OOO 소매업	대표	OO문고
6	OOO업	대표	OOO과자점
7	OOO 소매업	대표	OO화원
8	OOO 소매업	대표	OOOO가스상사
9	OO 제조업	전무	한국OOOO협동조합
10	OO 제조업	전무	한국OOOO공업협동조합
11	OO 제조업	이사	한국OO협동조합
12	OOO 소매업	사무처장	(사)한국OO협회
13	OOO업	사무총장	(사)대한OO협회

□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고용 간의 관계를 기업 내 고용량 증가, 산업 내 고용량 증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먼저, 한 기업 내에서 고용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거래처가 확장되거나, 또는 납품처가 확보되어 고객이 증가하고 시장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발생함.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면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 늘어남.

  "저희가 갈 수 있는 시장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빵도 있고 떡도 있고 빙과류 아이스크림 팥빙수들 여러 가지 있는 데 그런 종류의 시장을 대기업이 선점하면 다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지정이 돼서 대기업이 더 이상 못들어 오니까 우리가 오히려 팔 수 있게 되었죠" (제조업종 OOO푸드 대표)

-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이 기존에 진입하지 못하였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
- 그리고 기업이 조금만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다

양한 방법을 고안하면 사업에 활기가 생겨 매출액 신장이 가능함.

-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은 해당 지역에 회사와 제품을 알리게 되는 기회로 작용하여 필요 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함.

"저희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납품하고 있고 행사 위주로 뛴다. 고정 자리가 아닌 팝업스토어처럼 2주간해서 제품 보여주고 그러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제조업종 OO식품 대표)

○ 결국, 이와 같은 시장, 즉 유통망 확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짐.

"우리가 동네 빵집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각 지부를 통해서 협회 위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적합 업종을 하기 전과 한 뒤의 차이가 한 20% 정도는 매출이 늘었고 또 20% 정도의 동네 빵집 자영 제과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합 업종제도가 순기능이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OO업종 협회관계자)

○ 그리고 매출 증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설비를 늘리게 함.

○ 또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이전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함.

○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인력, 연구개발인력 그리고 관리인력의 증가가 생기는 것임.

"지금 저희는 네모난 어묵을 만들기 위한 중간 가공품을 만들어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니 결국 크려면 소비자들이 사는 최종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만드는 어묵의 생산함량이 20%도 안된다. 70%는 넘어야 질이 확보 된다고 보고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더 이상 진입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질을 높여서 이 시장 또한 노려볼만하다고 생각한다."(제조업종 OO식품 대표)

"확장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새 공장을 오픈 할 건데 완제품 공장을 해야 해요. 지금은 중간재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공정을 늘리면 12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조업종 OO식품 대표)

○ 궁극적으로, 생산력 증대와 제품의 다양화는 다시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고 꾸준한 매출 확보를 통하여 이익이 개선되고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됨.

□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산업 수준에서 고용증가도 가능하게 함.

○ 한 기업 내 고용의 양이 증가하면 당연히 해당 산업의 총고용량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산업 수준에서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이 이루어지면, 신규 대기업의 진출과 확장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해당 업종 내 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들의 시장 확보는 기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즉 폐업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고 동시에 해당 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함.
- 그 결과, 산업 내 총고용증가가 가능함.

"저희는 팔앙금 중 중견 기업에 앙금종류가 납품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OO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걸 막아줌으로써 거기에서 생산 시설 확충을 못하고 생산을 늘리지 못해요. 그대로 가다 보니까 같은 거래처에 두 군데 들어가고 있는 데 그게 빈도가 같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리점에 가 보면 자기 샘플을 던져 놓고 갔는데 . 이거 바로 우리가 보고해 버리니까 진입 못하는 거지요. 우리 거래처가 늘어나고 실제로. 저희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지요. 적합 업종으로 선정된 이후로." (OO업종 협회관계자)

"똑같은 질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단가 싸움에서 밀리거든요. 저희는 팥앙금이 수입산도 들어오고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막으니 그나마 국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OO업종 협회관계자)

"빵집의 경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거리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막이 있으니까 20% 이상 동네 빵집 자영 제과점이 생겼습니다." (OO업종 협회관계자)

"그나마 정부에서 도와줘서 그거라도 제재를 해서 못 하게 해 놓으니까 저희 업체들이 매출도 늘고 젊은 사람의 창업도 늘고 그래서 그나마 활성화가 되는 판국인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보호해 달라는 거지요." (OO업종 협회관계자)

○ 이러한 결과, 새롭게 시장 내 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식품산업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식품이 장류 김치, 젓갈 등 다시 말하면 1000~2000년을 내려온 전통식품은 우리가 잘 육성하고 보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건데 무엇을 물려주느냐? 맛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고추장 장류를 보면 서울에서 사먹는 거나 제주에서 사먹는 거나 맛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고유의 맛이 있어야 하는 데 호남 지역에 가면 깔깔한 맛 경상도에 가면 짭짤한 맛 이러한 부분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산업을 보호하고 면면이 이어가는 데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소상인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과 가격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경쟁을 하려면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특성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지요." (OO업종 협회관계자)

○ 결과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산업 내 진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 내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여 해당 업종 내 고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상의 FGI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의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

제6절 생계형 적합업종 내 기업 사례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정 제도와 고용의 양과 질 간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한 업종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1. A기업

○ 기업 일반현황

- A기업은 경남 진주에 자리한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로 2008년 설립되었고, 대표는 대학교 재학 중 창업동아리를 통해 현재 사업을 시작하게 됨.
- 사업체는 2016년 이전까지 상용직 근로자 수가 8명으로 소상공인에 속했었음. 그리고 2017년 약 두 배인 17명으로 증원되고, 2018년 18명이 되면서 현재 이 기업은 소기업에 속함.
- 매출액은 2016년 7억 원, 2017년 9억 원, 그리고 2018년 1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주요 매출처의 60%는 백화점으로, 현재 영남권 백화점에 모두 입점하여 있으며, 그 외에 40%의 매출처는 다양한데, 주로 학교 등 기관 내 급식소에 납품하고 있음.
- 2008년 사업 시작 이후 이직은 1명 발생하였음.
- 작업공정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자들이 원재료 투입, 가공, 검사, 결과물 도출 등을 수행함.
- 주간 생산이며, 극성수기,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 잔업은 극성수기에만 2시간 발생. 주 5일 근무
- 연봉제를 하고 있으며, 매년 말 연봉 협상 진행함.
- 2017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보면,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이하 근로자들이 없었으며, 2018년 매장의 판매직 직원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지 못해 2018년 매장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함.
- 직급체계를 보면, 연차에 따라 주임-대리-과장-부장 직급을 두고 있으며, 기본급에 차이를 두고, 개인 근로자의 회사 성과에 대한 이익기여분에 따라 변동상여금을 주고 있음. 특히, 원재료를 배합하는 과정이 핵심 공정으로 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숙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임금수준은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법정 연차휴가 제공, 정부 지원 제도 등 근로자에게 정보공유, 여름철 휴가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였고, 대표는 이러한 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익률이 개선됨.
- 한 가지 예로, 사천 지역의 학교 몇몇 군데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입 차단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납품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음. 당시도 같은 상황으로 A기업은 대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음. 대기업과는 단가에서 경쟁이 될 수 없었음. 대기업이 이러한 납품 경쟁에 참여하면 단가를 많이 낮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은 해당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됨. 그러던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를 학교 측에서 알게 되었고,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학교가 A기업과 거래를 결정하게 됨. 이를 기회로 A기업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되어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됨.
- 시장이 확대되면서 물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 대응을 위하여 생산뿐 아니라 사무직 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음. 사무관리직과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음.
- 그리고 매출액이 상승하고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게 됨. 현재 A기업은 온라인 시장과 카페 형식의 매장을 준비하고 있어, 1년 사이 30대 정규직 근로자 8명을 채용할 수 있었음.
- 그리고 A기업은 2017년 공장 설비투자를 하였고, 매출액 대비 투자율은 44.4%임.
- 시설투자가 들어간 가장 주요한 부분은 작업장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공조시설을 확대한 것임. 작업장은 온종일 콩을 끓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음. 이는 제품에도 문제이지만 작업자들의 건강에 이로울 수 없음.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진행함. 다음으로는 절

대 생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기계의 생산 가능성(capa)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함. 최대한 잔업을 줄여 초과근로 발생을 막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근로시간 변화는 특정한 관계가 없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근로자 임금보다는 복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일정 시장의 확보로 인하여 사업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고용안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예상 고용효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보다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이 지정 업종이 많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경쟁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인 원가경쟁력 문제가 개선되어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익률 개선은 근로자를 더욱 채용할 수 있게 하며, 기업 내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할 수 있음.
-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폐업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용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봄.

2. B기업

○ 기업 일반현황

- B기업은 전남 장흥에 자리한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로 2004년 설립되어 2008년 법인화하였음.
-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5명, 2018년 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남. 현재 이 기업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주요 연령은 60대이며, 현재 공장장은 70대임. 생산직은 여성이 다수이며, 남성 작업자가 1명 있음. 이외 품질관리 및 영업관

리 남자직원 1명이 있음.

- 공장 인근의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내 젊은 사람들 없음
- 비정규직은 성수기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며칠 동안 활용
- 매출액은 2016년 5억 원, 2017년 6억 원, 그리고 2018년 7억 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 주요 매출처는 백화점과 휴게소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 전국 50여 개 휴게소와 전국의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에 입점하여 있음. 10% 가량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음.
- B기업의 전략이자 강점은 제품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특정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품질이 우수해서 제품 고급라인 개발을 위해 백화점에서 함께 제품 개발을 요구하기도 함.
- 작업공정은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근로자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설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포장공정임.
- 장(醬)이 완성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림.
- 주간 생산이며, 명절 전후로 성수기여서 이러한 특정 시기에만 잔업, 즉 초과근로가 일정 정도 발생함. 그 외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지만 생산 특성상 주 2~3일 근무자도 있음.
- 직급체계를 보면, 연차에 따라 사원-대리-과장 직급을 두고 있으며, 기본급에 차이를 두고 있음.
-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명절 상여금과 여름철 휴가비 지급, 해외 박람회 연구 지원 등이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직접고용을 늘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사업체는 고급 장류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이 결국 고용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체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고급 제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시장에서 제품 개발 및 납품 요청을 받음.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고급 상품 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

기업보다는 해당 업체를 찾음.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대기업에서 높은 품질의 강점을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다수의 대기업이 고품질의 상품 라인 개발에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찾는 경우가 발생함.

- B기업은 고급 제품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백화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 제품 입점을 요구하였고, 온라인과 같은 매체를 함께 이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률이 높아짐.
- 그리고 지속적으로 백화점 측에서 새로운 제품을 요구하고, 또한 다양한 시장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유인이 생김. 물량 증가와 동시에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근로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음. 생산과 영업관리 직무를 충원하였고 향후 연구·개발직을 더욱 채용하여 상품을 개발하려 함.
- B기업은 3년 전 공장 설비투자를 하였고, 매출액 대비 투자율은 60% 였음.
- 설비투자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콩을 끓이는 것은 기존에 가마솥에서 하였다면 현재는 설비를 통해 생산하고 있음. 꽤 무게가 나가는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육체적 무리를 덜기 위해 현대식 설비 고민을 하게 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고용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봄.
- 또한, 사업을 유지하면서 숙련공들을 육성하게 됨.
- B기업은 고급 제품으로 시장에서 유명해지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 결과, 생산직 숙련근로자들의 기능에 의한 제품의 품질 확보를 더욱 기대하게 함. 그 결과, 숙련을 가진 근로자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었고 대표는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고민하고 그리고 더욱 숙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예상 고용효과

- 대기업의 진입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향후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해썹인증을 받아서 더 다양한 시장에 진입하려 함.
- 현재 주 거래처와의 거래도 이러한 인증이 있으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봄.
- 이러한 인증도 아무리 소기업이지만 2,000만 원 정도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여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데 이러한 업종 보호 제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함.
-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작은 기업이지만 독특한 특성과 시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임.
-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자연스럽게 향상할 것이라고 봄.

제7절 소결

○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기업들의 매출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대비 투자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소상공인 투자율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들은 자신들의 품질 경쟁력을 강점으로 뽑음. 이와 같은 업종 보호 제도와 함께 더욱 품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한 업종 내 기업들은 이제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내 기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업종 보호 기간 동안 고용의 변화를 보면, 고용 규모의 큰 변화는 없음.
- 적합업종 지정 동안 고용 규모의 변화 없음 응답이 가장 많음.
- 적합업종 지정 동안 근로조건의 변화도 크게 없는 것으로 인식함.
- 그러나 주목할 것은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활용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례조사 결과와 함께 미루어보면, 업체의 성수기·비성수기에 따른 임시직 활용이 큰 것이라 볼 수 있음.

- 상용직 대비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핵심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조건 측면을 보면,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이를 업종 보호 효과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부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 내 사업체들이 체감하는 업종 보호 효과는 매출액 증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폐업률 감소 등을 주목해야 함.

- 매출액 변화는 고용 규모 변화에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액 안정화가 고용안정에 중요함.
- 그리고 근로조건 향상에는 매출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고용 규모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현 고용 유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정규직은 ① 유지, ② 채용, 시간제의 경우는 ① 유지, ②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여전히 고용 규모 유지가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 확대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임금상승, 이직률 하락, 고용안정 상승, 작업환경 조건 상승, 종업원의 일에 대한 흥미와 헌신도 증가도 예상됨.
- 그리고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근로조건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내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이 된 제조기업과 소상공인 제조기업을 사례조사를 하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의 개선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짐.

- 그러나 사례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고용 규모의 증가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업종 지정으로 인한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매출액 증대, 그리고 이익률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이것이 고용효과로 이어진다고 봄.
-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사업체들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사업체가 성장하는 경우 근로조건 개선에 관해 투자할 것이며,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고용창출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고용효과까지 기대한다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함이 필요함.

○ 설문조사 및 기업 사례조사와 함께 보면, 업종 내 사업체들은 이전 지정 제도와 효과가 같거나, 또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고용의 양과 질의 수준 향상을 이미 경험한 사업체들은 동일하게 또는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함.
- 둘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비교하여 업종 보호에 더욱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업종 내 사업체들은 기대 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본래 고용효과를 담보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단언할 수 없으며, 향후 업종 지정이 시작된 이후 제도의 고용의 양과 질의 효과를 면밀하게 평가해볼 필요 있음.
- 본 제도가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고용의 양과 질의 개선이 아니고, 또한 고용효과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 업종 지정과 고용의 양과 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보다는 몇 가지 경로가 존재함. 매출액 증가, 이익률 개선, 설비투자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의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지정의 고용의 양과 질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고용효과까지 담보하려면 어떠한 지원제도가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작업장 현대화 또는 작업설비 확충을 위한 지원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봄.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2018.5.).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에는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비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는 만큼 그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12월 13일 현재 지정 완료된 업종은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 소매업 등 3개 업종이며, 12월 중 고추장·간장·된장, 청국장, 두부 업종은 심의 예정인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 실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용 축적된 현장 경험과 자료가 없음. 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이라는 목적을 둔 정책의 고용효과의 경험을 토대로 생계

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고용보험 DB 사업장정보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양적 고용효과를 추정하였고, 8월 기준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한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기업 사례 연구를 통해 질적 고용효과를 추정하였음.

- 양적 분석을 위해 제10차 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식별하였고, 이러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우 정확하게 지정된 업종 및 품목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연구 결과 해석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폐업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안정과 증가를 도모하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와 FGI 결과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경로가 모두 존재함을 제시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우세할 것임을 시사함.

- 양적 분석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효과의 크기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따라서 소규모 기업 및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고용효과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점은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한 업종 내 기업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업종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고용 규모의 큰 변화는 없었음. 사업체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매출액 증가와 폐업률 감소에서 두드러짐. 그러나 사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용규모 유지, 정규직 유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하여 전과 같거나 보다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상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정짓기보다는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책 목표가 고용창출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 만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 확장으로 추가 고용 여력이 발생해도, 신규 고용으로 인해 소상공인 인원 기준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체가 신규 고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음. 경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자체는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임. 고용창출보다는 기업 규모와 고용유지 자체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생계형 업종 지정의 업종 보호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로는,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바대로 매출액 증가가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익률 개선이 상품 개발·혁신이나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때임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거쳐 기업 단위의 신규 고용창출이나 산업 차원의 고용량 확대라는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됨.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현재 인력과 설비의 가동률이 100% 미만인 업체가 다수라면 업종 보호 효과가 단기간에 신규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기업 규모 유지와 고용안정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다른 한편, 특정 품목과 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업체들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음. 상당수의 신규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사업체의 매출 하락과 폐업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양적 고용효과의 불확실성은 큼.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되는 업종에서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이 경쟁하

는 독점적 경쟁시장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고용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규모 설비가 아닌 근로자의 기술과 숙련 수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체의 특성상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여 매출 향상을 노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인(動因)이 커지게 될 것임. 업종 보호는 대기업 진출과 확장으로 인한 영세 사업체에서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 가능성도 낮춰 소상공인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됨.

제2절 정책 제언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은 사업이 시행 초기에 있느니만큼 제도 운용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임.

○ 질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보다 강제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음.

- 대기업이 제도에 어느 정도로 순응하느냐가 고용안정 효과를 달성하는 데 관건이나, 이미 유사 사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관련 규제에 상당히 익숙해진 기업이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대기업과 수요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 홍보하여 영세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이라는 고용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이후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음.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진출과 확장이 제한되어 수요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감소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산과 판매에서 생산성과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고할 것임. 생계형 업종 지정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판로 지원이 필요함.
-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대형마트·대기업이 지배하는 유통구조에서 배제된다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고용영향평가 연구에서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 지방 출점 시 지방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매장을 할당한다던가, 소상공이 생산하는 지역 생산품 및 특산물 전문 코너를 운영하도록 배려하는 등의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함(박성재 외, 2015).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장 개선 지원이 필요함.
- 다만, 기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임.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영업 실적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
- 예를 들어, 일터 혁신 지원, 작업장 현대화, 작업설비 확충을 위한 지원 제도 수혜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임.

○ 영세 사업체는 상품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함.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아 연구개발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연구개발 전담 인력과 부서를 둘 수 없음.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경험이 없는 영세 사업체는 제안서 작성 등의 노하우가 부족하여 사업 수혜를 받을 기회를 잡기가 어려움.

- 연구개발 지원비 신청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컨설팅을 제공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 생산하고 있는 상품 관련한 기술과 수요 정보가 있어 니치마켓 창출 능력을 가진 영세 소상공인과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업종 보호는 영세 사업체의 고용안정과 성장 가능성이 일정 정도 보장되므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연구개발 능력을 상품 개발과 혁신으로 실현하고, 사업체는 생산성과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윈-윈 효과가 있음.

□ 대·중소·소상공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해당 업종의 대-중소-소상공인 간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때 일자리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박성재·이종임·유대근·조장희(2015),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 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이성범(2017),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국제통상규범 검토 보고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준(20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_____(20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이윤보·이동주(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6(1).

이병기(2015),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15-22, 한국경제연구원

이재민(2015),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타당성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2017),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연구」,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

부 록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LISTID	ID	※ NO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조사전문 기관인 화인리서치 협동조합입니다.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인 '생계형 적합업종 고용효과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고용친화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업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에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KLI 한국노동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수행 : 화인리서치 협동조합
▶ 담 당 자 : 임용옥 실장 (TEL : 02-6964-6915)
▶ 회 신 처 : (FAX) 0505-909-8169
(E-MAIL) info@finecoop.co.kr

A 일반 현황

A1.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　　) 년도

A2. 귀사의 주된 업종은 무엇입니까? (　　)

서비스업	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② 중고자동차 판매업 ③ 자동판매기 운영업　④ 화원업종·화초및산식물소매 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⑥ 자동차전문수리업
제조업	⑦ 장류(간장) 제조업　⑧ 장류(고추장) 제조업 ⑨ 장류(된장) 제조업　⑩ 장류(청국장) 제조업 ⑪ 앙금류 제조업　⑫ 어묵 제조업 ⑬ 두부 제조업　⑭ 전통떡 제조업 ⑮ 햄버거빵 제조업　⑯ 기타 인쇄업

그 외 업종 *(☞ 조사중단)*

A3.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A4. 귀사의 연간 투자총액은 얼마입니까? (설비, 시설 및 기술투자 포괄)

2016년	2017년	2018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A5. 귀사의 고용 유형별 전체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고용형태 및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용직	내국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외국인						
임시·일용직	내국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외국인						
합계(총고용 인원)							

A6. 귀사의 총 고용인원 중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없는 경우 0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가족 종사자가 없는 경우, A7로 이동*

A6-1. (제조업(A2=⑦~⑮)) 가족 종사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사무·관리직 ② 연구·개발직
③ 품질 관리직 ④ 생산·기술·기능직
⑤ 영업·판매직 ⑥ 기타 ( )

A6-2. (서비스업(A2=①~⑥)) 가족 종사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사무·관리직 ② 고객응대·상담직
③ 수리·유지보수·기능직 ④ 포장·운송
⑤ 기타 ( )

A7. 귀사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년

A8. 귀사의 20-30대 청년 인력 고용에 대한 의견을 순위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사업 특성상 청년 인력 고용 필요성 매우 낮음
② 이미 적절한 청년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③ 추가적인 청년 인력 고용을 희망하나 적절한 교육 및 경력을 가진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④ 상용직으로 고용하나 이탈이 잦음
⑤ 임시직으로 고용하나 이탈이 잦음
⑥ 기타 ( )

A9. 귀사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을 직종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전 총액기준으로 응답, 단위 만원)

	보유여부	2014년	2016년	2018년
사무·관리직	① 없음 ② 있음 ☞			
연구·개발직	① 없음 ② 있음 ☞			
품질 관리직	① 없음 ② 있음 ☞			
생산·기술·기능직 수리·유지보수직	① 없음 ② 있음 ☞			
영업·판매직	① 없음 ② 있음 ☞			
고객응대·상담직	① 없음 ② 있음 ☞			
포장·운송직	① 없음 ② 있음 ☞			

A10. 같은 제품을 생산 및 서비스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여 귀사가 가지는 우월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위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기술적 능력 ② 지리적 위치
③ 디자인의 우수성 ④ 브랜드 가치
⑤ 가격 ⑥ 품질
⑦ 없음 ⑧ 기타 ( )

A11.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현재 귀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사무·관리직 (인사·총무·기획)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연구·개발직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품질 관리직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생산·기술·기능직 수리·유지보수직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영업·판매직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고객응대·상담직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포장·운송직	⓪ 해당없음	① 부족하지 않음	② 부족함 ☞ (부족인원 수: 명)

☞ *모든 직종에서 "부족하지 않음"인 경우, B1로 이동*

A11-1. (A11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귀사의 인력 부족(채용하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순위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현재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② 지원자 부재
③ 지원자는 있으나 적격자 부재
④ 생계형 적합업종 미선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⑤ 투자나 사업확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미래경영에 대한 예측 불가능)
⑥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투자 및 사업 확장의 어려움
⑦ 투자 및 사업 확장에 관한 비용 조달의 어려움
⑧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B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고용효과

※ B파트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B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전과 이후 고용 규모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감소 ② 변화 없음 ③ 증가

⬇ ⬇

B1-1. 고용 규모 변화에 있어 주된 이유
① 매출액 감소
② 조직 축소
③ 업무 효율화
④ 기타( )

B1-2. 고용 규모 변화에 있어 주된 이유
① 매출액 증가
② 투자 증대
③ 주문 물량 증가
④ 기타( ))

B1-3. (제조업(A2=⑦~⑮)인 경우) 증원된 인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사무·관리직 ② 연구·개발직
③ 품질 관리직 ④ 생산·기술직
⑤ 영업직 ⑥ 기타 ( )

B1-4. (서비스업(A2=①~⑥)인 경우) 증원된 인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사무·관리직 ② 고객응대·상담직
③ 수리·유지보수·기능직 ④ 포장·운송
⑤ 기타 ( )

B2. 적합업종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모델) 수가 변화하였습니까?

지정 이전에 제조/판매/취급하던 제품(모델)의 수를 100으로 볼 때 지정 이후 제조/판매/취급하는 제품(모델)의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이전에 비해 취급 품목의 수가 10% 증가했다면, 110%로 기입,
지정 이전에 비해 취급 품목의 수가 10% 감소했다면 90%로 기입
지정 이전과 지정 이후 취급 품목의 수가 동일하면 100%로 기입

지정 이전	지정 이후
100%	( )%

☞ *도입 전후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모델)수가 동일한 경우, B3으로 이동*

B2-1. 제품(모델)수가 변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 새로운 수요처(시장) 발생
② 기술력/서비스력 향상
③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B3. 적합업종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귀사의 향후 5년 이내 폐업 가능성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도입 이전일 경우 향후 5년이내 폐업 가능성	도입 이후일 경우 향후 5년이내 폐업 가능성
%	%

☞ *도입 전후 향후 5년 이내 폐업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 B4로 이동*

B3-1. 폐업 가능성이 변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인 때문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없는 원인 때문
③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B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사업체 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항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영향				
1) 임금	① 하락	② 그대로	③ 0~5% 증가	④ 5~10% 증가	⑤ 10% 이상 증가
2) 이직률	① 하락	② 그대로	③ 0~5% 증가	④ 5~10% 증가	⑤ 10% 이상 증가
3) 고용안정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4) 종업원 일의 흥미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5) 작업환경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6) 종업원 헌신도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C 향후 전망

C1. 향후 2-5년 간 시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C1-1.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	2024년
백만원	백만원

C2. 향후 2년 간 어떠한 매출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

① 증가　　② 감소 *(☞ C3으로 이동)*

C2-1.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 )% 증가

C3. 매출이 증가한다면, 추가 고용과 임금 인상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매출	추가 고용	임금 인상
5% 증가	( )명 추가 고용	기존 임금의 ( )% 인상
10% 증가	( )명 추가 고용	기존 임금의 ( )% 인상
20% 증가	( )명 추가 고용	기존 임금의 ( )% 인상
40% 증가	( )명 추가 고용	기존 임금의 ( )% 인상

C4.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귀사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부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사업장 내 시설투자 ② 부채 감소
③ 근로자 임금 인상 ④ 근로자 복지 제공
⑤ 사업 확장 ⑥ 기타 ( )

C5. 앞으로 채용한다면, 어떠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 보기에 표시(✔)해 주세요.

근로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근로시간	① 전일제	② 시간제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30대	② 40~50대	③ 60대

C6. 향후 2년간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 보기에 표시(✔)해 주시고, 적어 주세요.

구분		향후 2년간 채용계획		
고용형태	상용직	① 없음(현재 유지)	② 없음(줄일 계획)	③ 채용예정(약 명)
	임시·일용직	① 없음(현재 유지)	② 없음(줄일 계획)	③ 채용예정(약 명)
근로시간	전일제	① 없음(현재 유지)	② 없음(줄일 계획)	③ 채용예정(약 명)
	시간제	① 없음(현재 유지)	② 없음(줄일 계획)	③ 채용예정(약 명)

D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고용효과

D1. 귀사의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 보기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영향(예상)				
1) 임금	① 하락	② 그대로	③ 0~5% 증가	④ 5~10% 증가	⑤ 10% 이상 증가
2) 이직률	① 하락	② 그대로	③ 0~5% 증가	④ 5~10% 증가	⑤ 10% 이상 증가
3) 고용안정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4) 종업원 일의 흥미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5) 작업환경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6) 종업원 헌신도	① 많이 하락	② 조금 하락	③ 그대로	④ 조금 증가	⑤ 많이 증가

- 귀한 시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발행연월일	2019년 12월 18일 인쇄 2019년 12월 28일 발행
▪ 발 행 인	배 규 식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 · 인쇄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344-0 (비매품)